



2026.01 | 제6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기업지배기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규제동향을 포함하여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 4

- ① 서언 • 4
- ② 이사회 구성 • 5
- ③ 이사회 안건 • 16
- ④ 이사회 운영 • 20
- ⑤ 이사회 독립성 • 31
- ⑥ 이사회 전문성 • 35
- ⑦ 이사회 다양성 • 48
- ⑧ 이사회 평가 • 55
- ⑨ 사외이사 보수 • 70
- ⑩ AI 거버넌스 감독 • 74
- ⑪ 결언 • 83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 84

-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 84
-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 91
- ③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 104
- ④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 • 111

III. 그룹·센터 소식 • 113

- ① 이사회·감사위원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이용 대상 전면 확대 • 113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 서언

요약

-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회사 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의사결정기구임
- 이와 같이 이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효과적인 이사회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고려하는 시기가 되었음
- 이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KOSPI200 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주요 현황과 관련한 공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함

서언

- 이사회는 기업 경영활동 및 경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고받으며 주요 사안에 대한 핵심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 중임
 - 기업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업지배기구를 연결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 중임
- 이에,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KOSPI200 기업의 공시사항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연관된 항목들을 조사해보고 의의를 고찰하고자 함
 - KOSPI200 기업은 산업별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군으로 본 센터는 하기 <그림 1>에서 기술하는 기본 공시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한 통계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항목별로 연관이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료도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그림 1> 이사회 관련 공시 정보 분석 대상 항목

1. 이사회 구성
2. 이사회 안건
3. 이사회 운영
4. 이사회 독립성
5. 이사회 전문성

6. 이사회 다양성
7. 이사회 평가
8. 사외이사 보수
9. AI 거버넌스 감독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역할

-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제393조 제1항)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제393조 제2항)하도록 규정됨
-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자신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외이사제도(상법 제542조의 8)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 사내이사는 업무를 집행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에게는 사내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이 강조됨
 -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이사진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에 참여하거나 최고경영진 및 타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음
 - 사내이사와 동일한 지위: 이사진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이 부여되고 비상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사내이사와 거의 동일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이러한 상법상의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역할 (계속)

<표 1> 지배구조 모범규준: ② 이사회 리더십 >> 1.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1.3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기능

주요 기능	세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 기타 ESG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의 • 대규모 자본지출의 결의 • 대규모 차입 및 자금보증의 결의 •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결의 •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 • 기업 인수합병 관련 주요사항의 결의 • 영업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의 결의 •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 최고경영자 승계 및 후보군의 육성·평가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감독 •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 • 리스크 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 • 조세 전략·거버넌스 수립 및 세무리스크 관리 • 정보공시의 감독 •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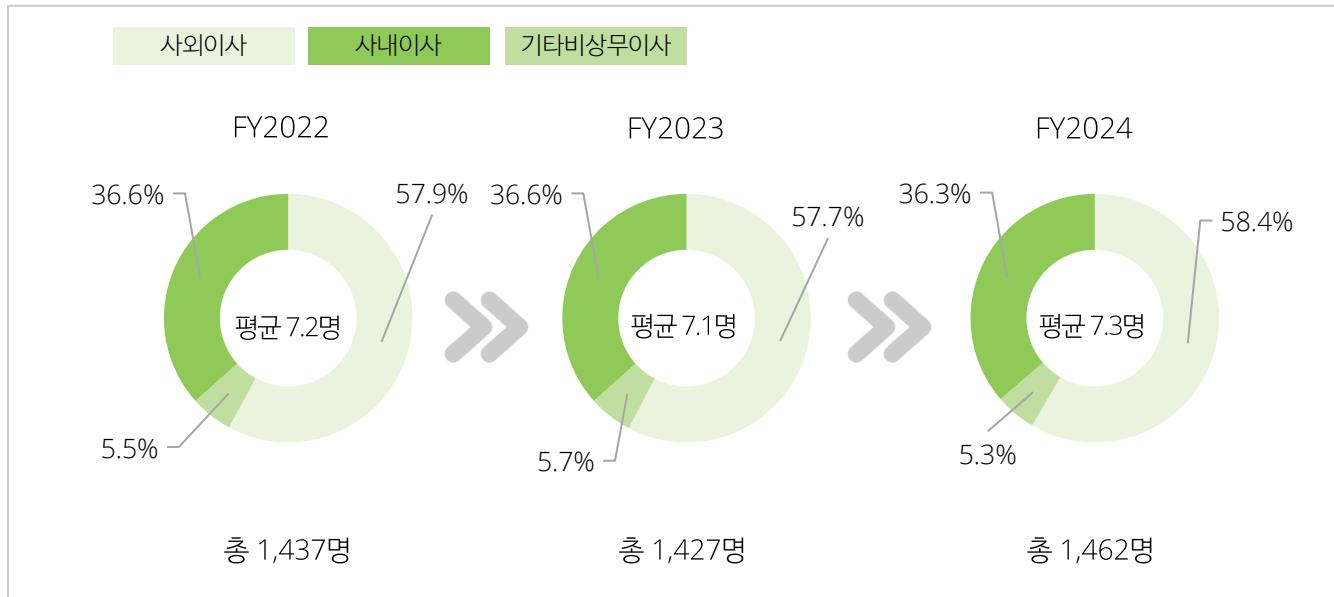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국내 KOSPI200 기업 이사진 구성

- 주식회사의 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한은 없으며 이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¹⁾
 - 회사는 정관에 임기 관련 규정이 '3년'인 경우에는 이사별 3년의 임기로 선임하고,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별 임기를 달리하여 선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사외이사의 경우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으며,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함²⁾
-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의 이사회는 평균 7.3명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0.2명 증가함
 - 사외이사 비율은 58.4%로 전기 대비 0.7%p 증가함
 - 사내이사 비율은 36.3%로 전기 대비 0.3%p 감소함
 - 기타비상무이사 비율은 5.3%로 전기 대비 0.4%p 감소함

<그림 1> FY2022 ~ FY2024 KOSPI200 기업 이사회 구성³⁾



1) 상법 제383조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제7호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상 FY2022-FY2024 사업보고서 공시내용(VI.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VIII.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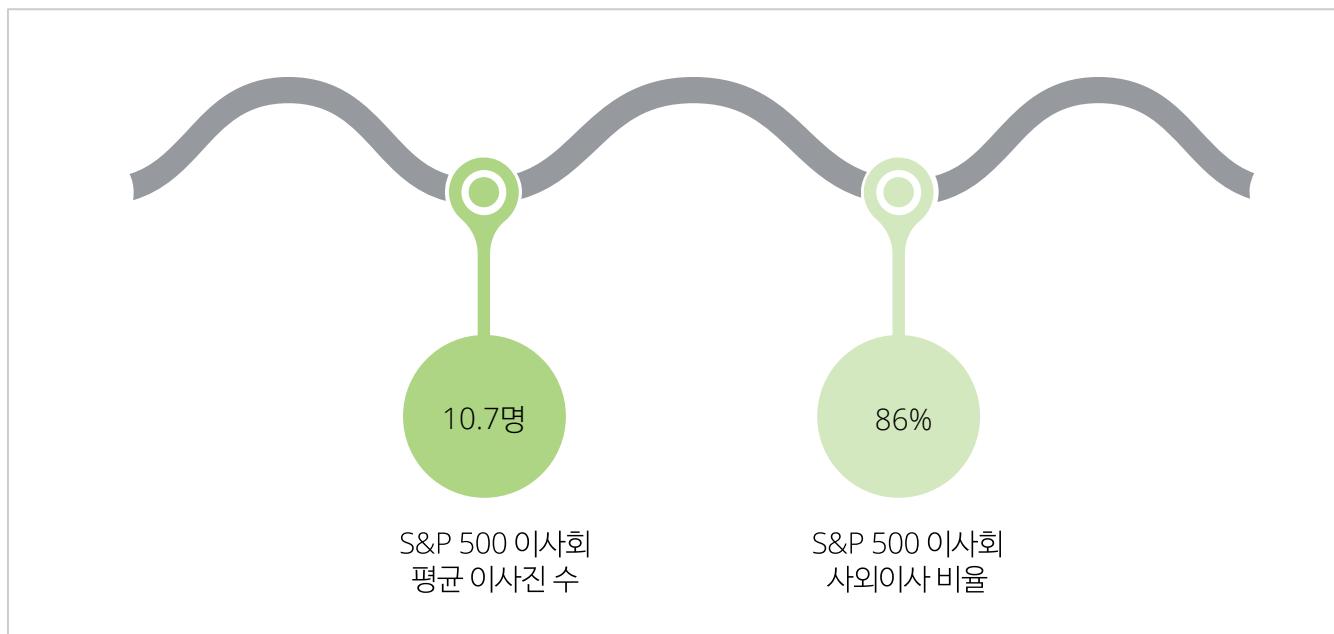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글로벌 이사진 구성

- FY2024 기준, 미국 S&P 500 기업의 이사회는 평균 10.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외이사의 비중은 86%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9.2명의 사외이사와 1.5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됨

<그림 2> FY2024 미국 S&P 500 기업 이사회 구성 ⁴⁾



- 이사회의 적정규모 연구와 관련하여, 이사진의 절대 수로 논의되기보다는 효율적 역할 수행에 달려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⁵⁾
 - 미국의 경우 7~9인 규모의 이사회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연구결과가 있음
 - 독일의 경우 12~14인 규모의 감사회⁶⁾구성이 효율성 측면에서의 상한선으로 제시되는 연구결과가 있음

4) Spencer Stuart, 「Board Index」, 2025.04.30.

5) 김화진, 「이사회 경영 – 지배구조 이론과 사례」, 2024.03

6) 독일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포함된 감사회(Supervisory board)와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사 공동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이사 선임 및 해임

1) 설명

-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⁷⁾하여야 하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⁸⁾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상법 제382조)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찬성을 득해야 함 (상법 제368조)
 -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함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정관규정에 의해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⁹⁾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¹⁰⁾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¹¹⁾
 - 회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법정 인원수에 유의하여 회사의 전략 방향과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대상자를 물색해야 함
 -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일반적인 이사 선임 방식과 동일하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결의를 하여야 함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음 (상법 제385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해야 함
 -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사가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 소수주주(발행주식 3% 이상 보유)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

7) 상법 제542조의8, 2025년 07월 개정 상법 시행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됨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둠)

8)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3조

9)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10) 의결권 있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보유(자본금 1천억원 이상 법인은 0.5% 이상 보유)

11) 상법 제392조의2,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항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이사 선임 및 해임 (계속)

- 2025년 2차에 걸쳐 개정된 상법은 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사의 의무와 선임 절차 등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추후 순차적인 준수가 요구됨 (→ 개정상법의 세부설명은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참고)
 -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확대함과 동시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제542조의8) : 기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로 확대함
 -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룰' 강화 (제542조의12)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rule의 적용을 규정
 -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364조) : 상장회사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제542조의7)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함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제542조의12) : 분리선출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상법상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음¹²⁾
 - 상법 시행령상 해당 상장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최대 2개까지만 겸직이 가능함¹³⁾
 -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겸임하려는 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재임은 가능하지 않음¹⁴⁾
-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 시 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목적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함¹⁵⁾

1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13)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4)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15)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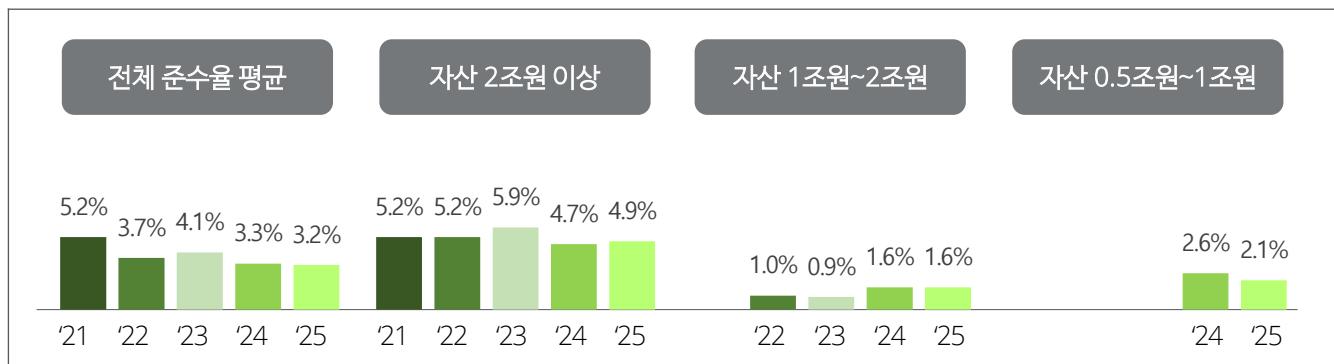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2) 집중투표제

-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짐¹⁶⁾

<그림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집중투표제 채택¹⁷⁾



- '집중투표제 채택'은 15개 핵심지표 중 전체 준수율 평균(3.2%)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3.2%로 전기 대비 0.1%p 소폭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9%로 전기 대비 0.2%p 소폭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6%로 전기 대비 동일한 수준임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1%로 전기 대비 0.5%p 소폭 감소함
- 대다수 기업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영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며,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및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기업 내 부담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 상법 제542조의7

17)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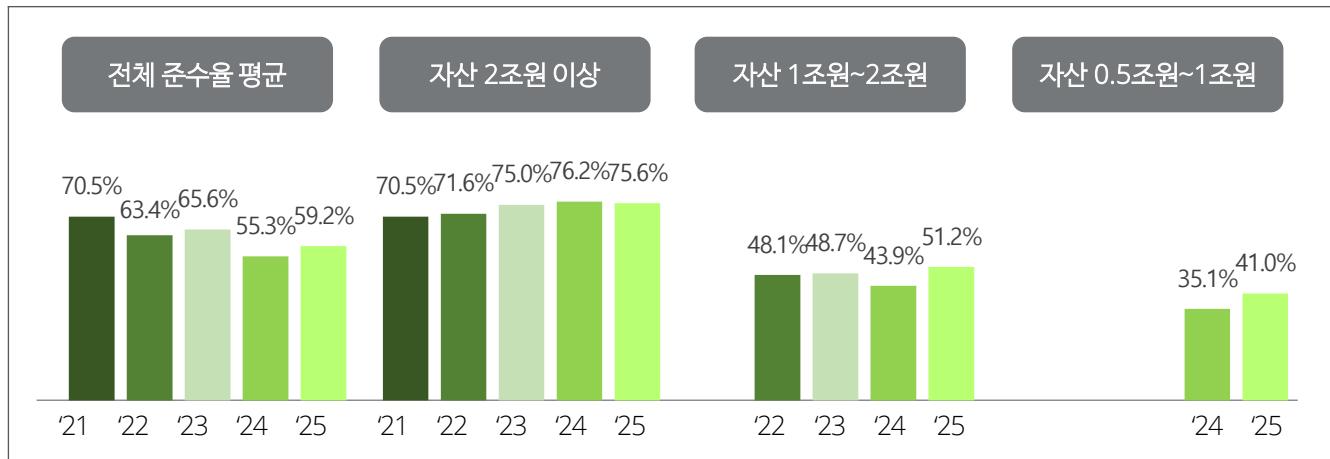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3)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하므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¹⁸⁾

<그림4> 핵심지표준수 현황-⑩기업가치훼손 또는 주주권익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¹⁹⁾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59.2%로 전기 대비 3.9%p 상승하여 개선세를 보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5.6%로 전기 대비 0.6%p 소폭 감소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1.2%로 전기 대비 7.3%p 증가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1.0%로 전기 대비 5.9%p 상승함
-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 지표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전반적인 준수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관련 위험요소로는 법규 위반 등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사업적 제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거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발생 시 경영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1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원칙 4

19)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의 취지는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이사의 수는 증가하고, 이사의 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모든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방대한 사항을 이사회를 통해 전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임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 중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²⁰⁾
- 국내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²¹⁾
- 관계 법규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유형은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최소 총원과 최소 사외이사 비중 등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표 2> 법규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유형

구분	위원회명	최소사외이사 비중	비고
상법	제542조의11 동법 시행령 제37조	감사위원회	3분의2 이상
	제542조의8 동법 시행령 제34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과반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6조, 제19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과반수
	제16조	감사위원회	3분의2 이상
	제16조	위험관리위원회	과반수
	제16조, 제14조	보수위원회	과반수

20)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

2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중

- FY2025 기준, 지정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대개 감사위원회(74.5%), 추천위원회(64.8%)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ESG위원회(57.3%), 내부거래위원회(47.6%) 및 보상/보수위원회(46.5%)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추천위원회 예시로는 임원후보/이사후보/회장후보/대표이사후보/그룹임원후보/자회사대표후보/계열사 대표 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있음
 - ESG위원회의 경우 최근 기존 지배구조/거버넌스위원회를 대체하거나 신규 설치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전기 대비 1.5%p(15사) 상승함
 - 경영위원회는 정도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및 미래전략위원회 등을 포함함
 - 보수/보상위원회는 보수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및 인사보상위원회 등을 포함함

<표 3> FY2025 지정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설치 비중 ²²⁾

구분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보상위원회
위원회 수	269	234	207	172	168
비중	74.5%	64.8%	57.3%	47.6%	46.5%

<표 4> FY2024 지정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설치 비중 ²³⁾

구분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보상위원회
위원회 수	258	222	192	161	147
비중	75%	64.9%	55.8%	46.8%	42.7%

22) 기업집단포털, 2025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361사), 2025.12. (<https://www.egroup.go.kr/egps/wi/thema/visualPage8.do#/>)

23) 기업집단포털, 2024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344사), 2025.12. (<https://www.egroup.go.kr/egps/wi/thema/visualPage8.do#/>)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2. 이사회 구성

2) 미국 이사회 내 위원회 감독 영역

- 미국 이사회의 경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감독 기능은 개별 특정 이슈 및 영역별로 이사회 전체 또는 소속위원회 간 감독 업무가 분장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리스크를 포함,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주 담당 조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5> 미국 이사회 내 위원회 감독 영역 ²⁴⁾

감독 영역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후보추천/거버넌스 위원회	리스크/위험 관리위원회
재무 및 내부감사 인재	5%	93%	2%	1%	0%
재무혁신	20%	70%	0%	0%	0%
사이버보안	25%	58%	0%	1%	9%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27%	52%	0%	3%	10%
제3자 리스크	35%	48%	0%	0%	14%
전사 리스크 관리(ERM)	35%	47%	0%	2%	15%
법률 및 규정 준수	37%	45%	0%	9%	5%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보고	30%	14%	0%	40%	3%

24)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3rd Edition」, 2024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3. 이사회 안건

이사회 안건 개요

-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을 의결하고 최고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업지배기구로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자 이사회의 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며 이사회 회의는 안건 검토, 보고 수령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 협의체로 운영됨
-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은 정기적으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상정할 일반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안건 상정 및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사회 의장은 정기적으로 이사진에게 이사회에 상정할 일반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임사외이사 선임 공시가 권고됨
- 선임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는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사회 내 이사회 의장, 선임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의 책임은 각각 명문화되어야 함
- 이사회 사무국 또는 지원담당조직은 안건 관련 자료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사진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¹⁾

1) 상법 제390조 제3항에 근거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3. 이사회 안건

1) 항목별 이사회 안건 비중

- FY2024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총 안건 수는 8,924건으로 전기 대비 423건(5.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47.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차순위로 인사(17.0%), 특수관계자거래(특수관계자, 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 등, 13.5%), 자금(조달/대여, 10.8%) 및 규정·정관(7.0%)의 순으로 나타났음
- 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총 안건 수는 8,501건으로 전기 대비 163건(2.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3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차순위로 인사(18.4%), 특수관계자거래(특수관계자, 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 등, 14.8%), 자금(조달/대여, 9.5%) 및 규정·정관(7.2%)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1> FY2022~FY2024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수 및 비중²⁾

구분	안건수 및 비중(%)												
	사업·경영	인사		특수관계자거래		자금		규정·정관		기타		소계	
FY2024	4,223	47.3%	1,513	17.0%	1,201	13.5%	960	10.8%	630	7.0%	397	4.4%	8,924 (100%)
FY2023	2,671	31.4%	1,563	18.4%	1,260	14.8%	805	9.5%	612	7.2%	1,590	18.7%	8,501 (100%)
FY2022	2,665	32.0%	1,531	18.4%	1,275	15.3%	720	8.6%	518	6.2%	1,629	19.5%	8,338 (100%)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상 FY2022~FY2024 사업보고서 공시내용(VI.1 이사회에 관한 사항)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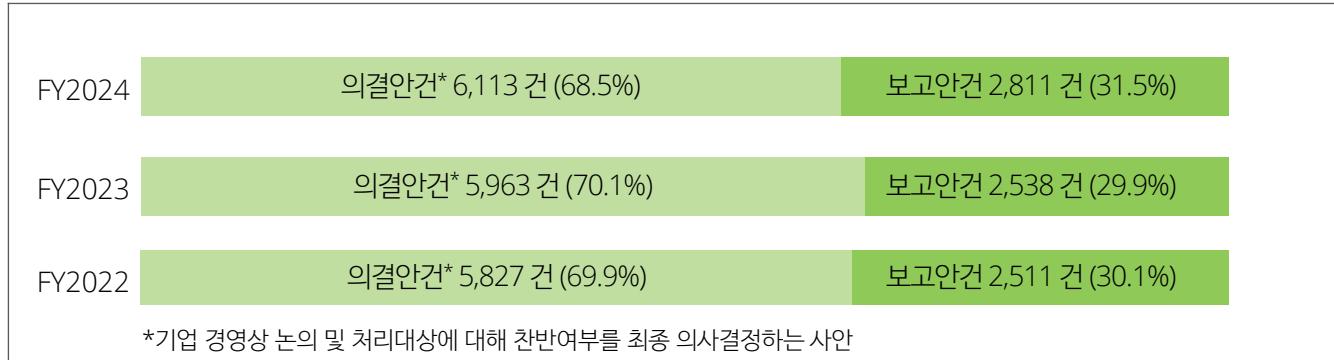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3. 이사회 안건

2) 이사회 의결안건 vs. 보고안건

- FY2024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의결안건은 6,113건(68.5%)이고 보고안건은 2,811건(31.5%)이며, 전기 대비 유의미한 변화는 없음

<그림 1> FY2022 ~ FY2024 KOSPI200 기업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 비중 ³⁾



3) 이사회 부결안건

- KOSPI200 기업 이사회의 찬성률은 99%에 달하며 이는 경영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문다는 지적과 함께,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편, 실무적 차원에서는 회사가 안건을 사전에 이사진에게 회람하고 회의 전 의견을 잠정적으로 조율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의 이사회 의결안건 중 반대가 포함된 안건은 44건(총 의결안건의 0.7%)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결된 안건은 12건(총 의결안건의 0.2%)임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의 이사회 의결안건 중 반대가 포함된 안건은 28건(총 의결안건의 0.5%)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결된 안건은 9건(총 의결안건의 0.2%)임

<표 2> 이사회 반대 안건에 따른 가결안건 또는 부결안건 예시 ⁴⁾

구분	안건예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 : 감사위원 후보 (주주제안)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 B사 : 주주환원정책 사전 심의 및 소수 반대로 안건 가결 • C사 : 해외 현지 자회사 설립의 건: 소수 반대로 안건 가결 • D사 : 경영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 E사 : OOO위원장 선임의 건: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 F사 : OO발전기금 출연의 건: 소수 반대로 안건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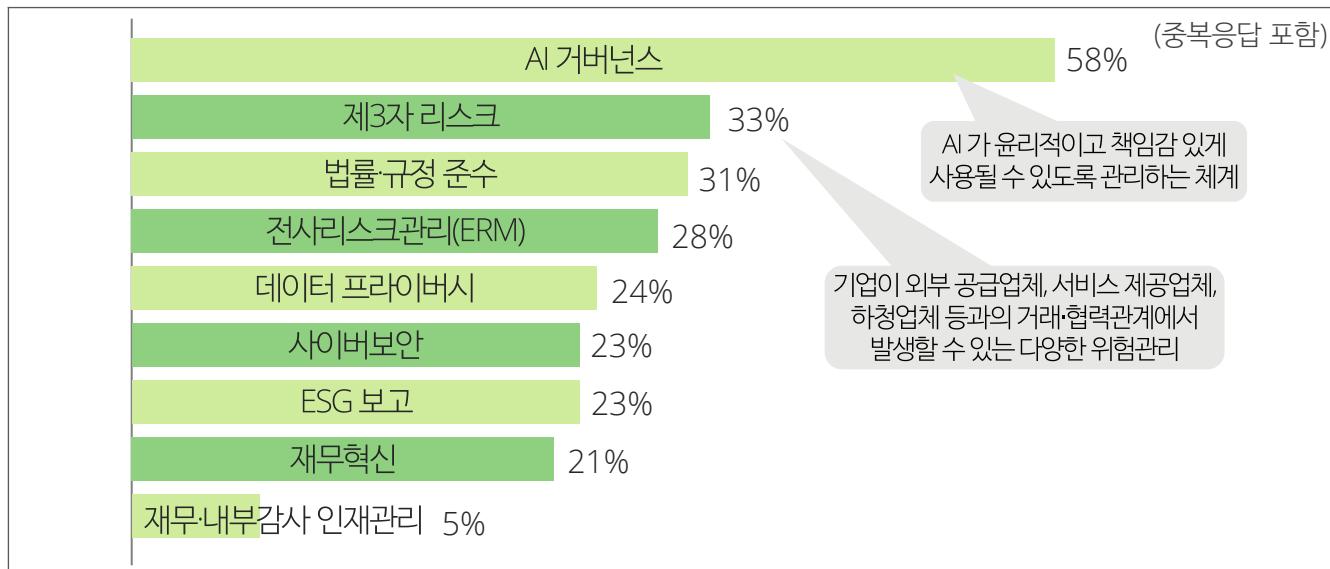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3. 이사회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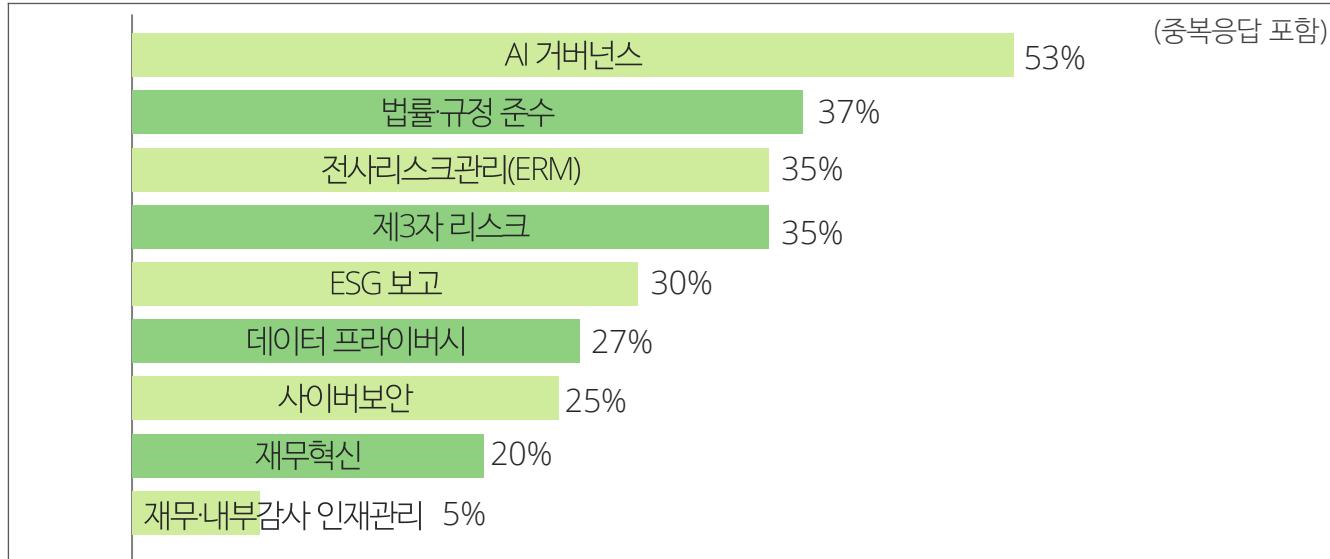
4) 글로벌 이사회 안건

- FY2023~FY2024 글로벌 이사회의 안건 중 AI 거버넌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FY2024는 58%로, 전기 대비 5%p 상승하여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AI의 확산에 따라 이사회가 AI 거버넌스를 핵심 아젠다로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3자 리스크(33%)도 기술 리스크와의 연계 속에 2위에 오르며 이사회의 전략적 관심이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났음

<그림 2> FY2024 글로벌 이사회 안건 비중⁵⁾



<그림 3> FY2023 글로벌 이사회 안건 비중⁶⁾



5)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제3판, 2024.03., 미국 기반 대규모 상장법인 사외이사 266명 대상 서베이 실시

6)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제4판, 2025.02., 미국 기반 대규모 상장법인 사외이사 237명 대상 서베이 실시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

1) 이사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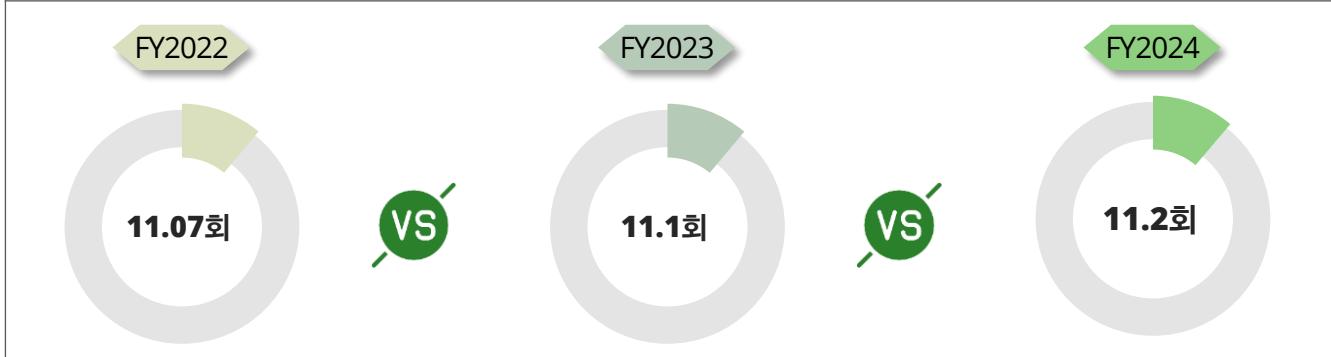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이사회가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 이사회 의장의 리더십을 통한 이사회 구성원의 회의 참여 활성화
 - 회의록 작성 및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유지·보존
 - 이사회 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 실시 권장

<표 1> 지배구조 모범규준: ② 이사회 리더십 >> 1. 이사회 회의 역할과 책임 >> 5. 이사회의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장은 건설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이사회는 연간 활동 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사회 및 위원회는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녹취·보존해야 하며,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기록할 필요가 있음 •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해 이사회 구성원의 회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사외이사의 감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권고됨

- FY2024 KOSPI200 이사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11.2회로, 최근 3개년간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됨

<그림 1> KOSPI200 이사회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¹⁾



1)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FY2022-FY2024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상 이사회 공시 정보(<https://dart.fss.or.kr/>)를 참고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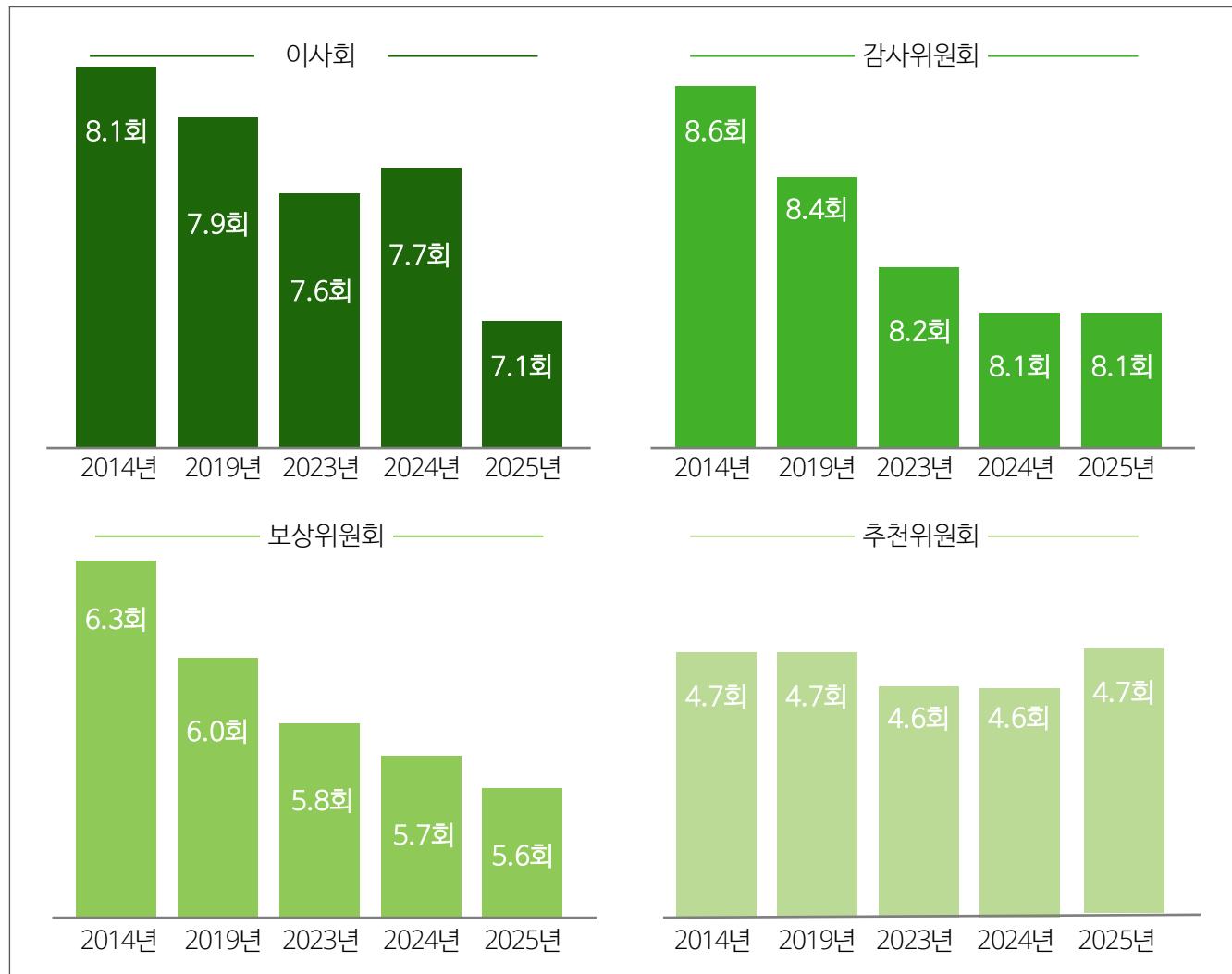
4. 이사회 운영

2) 글로벌 이사회 회의

□ S&P 500 기업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는 7.7회로, 전기 대비 0.1회 증가함

- 회의의 진행 소요 시간, 운영 방식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국내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S&P 500 기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와 유사한 빈도로 운영되는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그림 2> 글로벌 이사회·위원회 연평균 회의 횟수 추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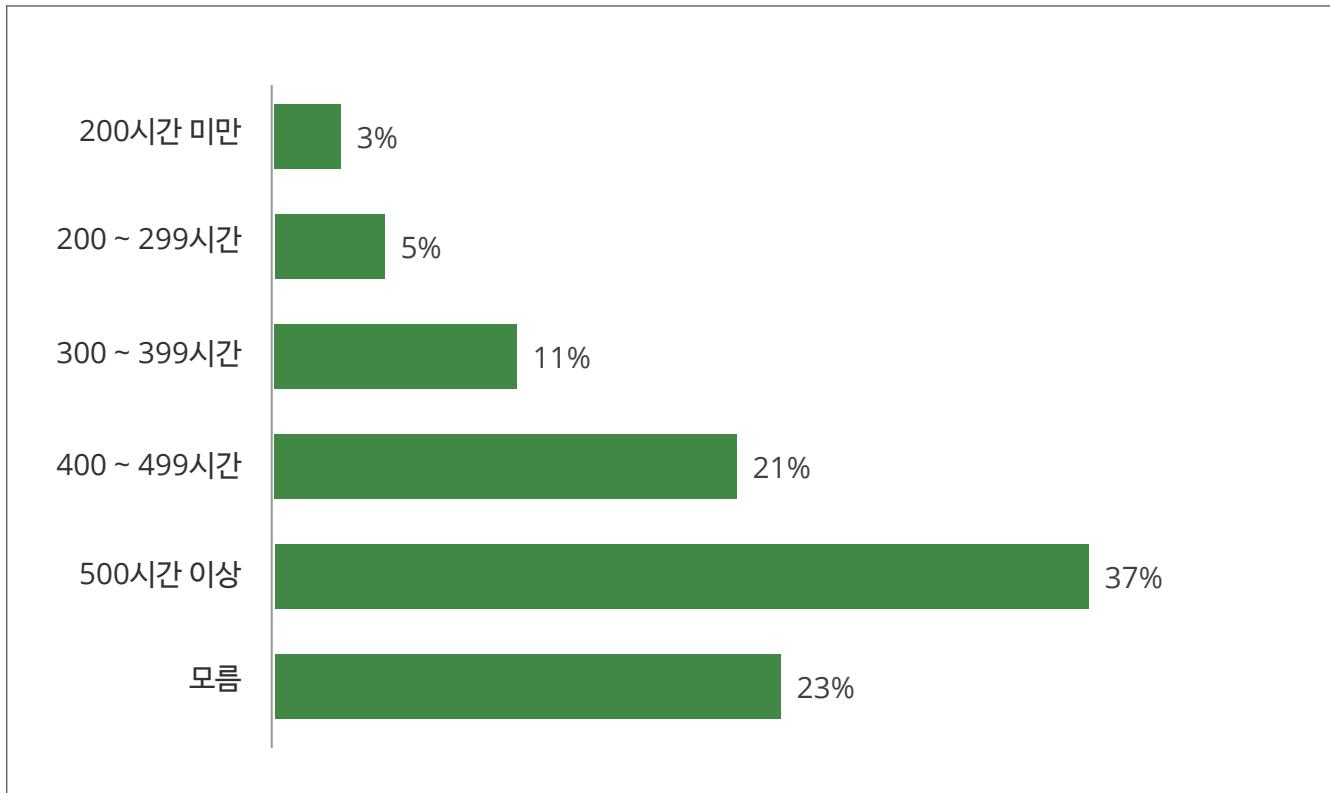
2) Spencer Stuart, 「2025 U.S. Spencer Stuart Board Index」, 2025.10.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출장, 자료 검토, 회의 참석 및 기타 관련 이사회·위원회 활동 등 직무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연간 200~299시간이 전체 응답자의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3> 글로벌 이사진 연간 평균 업무 소요 시간³⁾



3)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제3판, 2024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사회이사 지원조직

-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은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논의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며, 이에 따라 지배기구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 사회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 내부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어, 이사회 안건 검토, 추가 자료 요청, 교육 및 자문 연계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이사회 감독의 실효성과 직결됨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내부감사부서)은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핵심 조직으로, 내부통제·리스크관리·재무보고 감독과 관련한 점검 및 감사 결과 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함
 - 3분의 2 이상의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상시적·일상적 감사 수행에 한계가 있어 실무를 수행·지원할 내부감사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상근감사 설치 시에도 광범위한 감사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지원조직이 필수적임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상법은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금융사 지배구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등에서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한해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내부감사부서)은 내부통제 효과성을 독립적 시각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됨

<표 2>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국내 모범규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p>(I.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야 함</p> <p>(I.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함</p>
지배구조 모범규준	<p>(IV.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p> <p>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p> <p>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략…)</p>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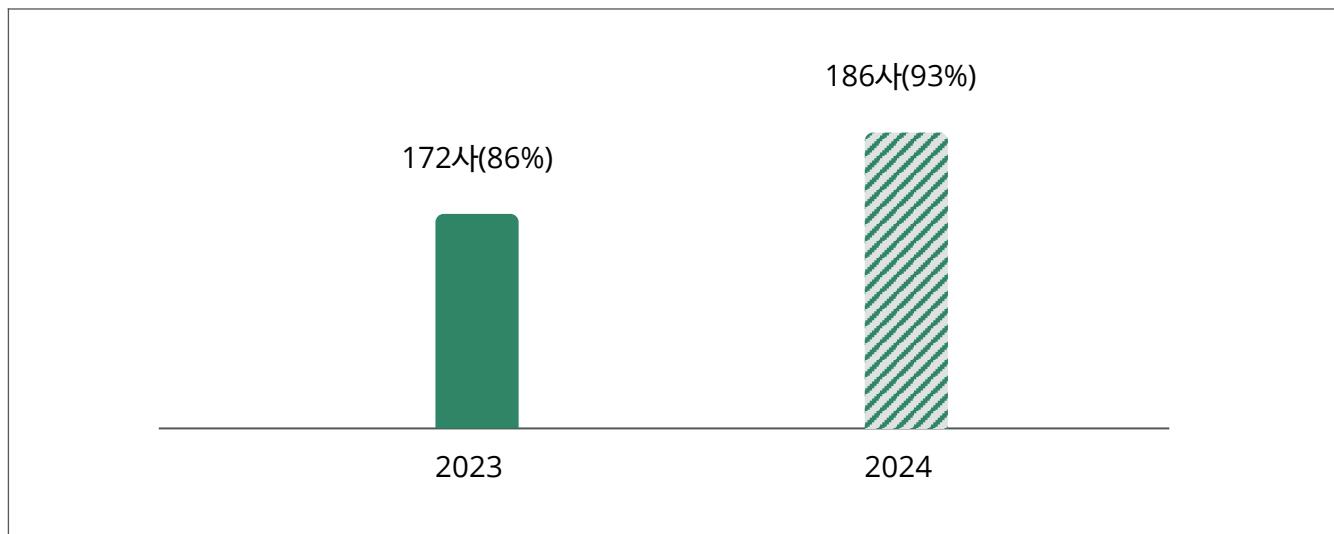
4. 이사회 운영

1)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수

□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186사(93%)로 전기(172사) 대비 9%p 상승함

- 핵심지표 준수현황 ⑫번 항목(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이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되면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설치 및 공시 정비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설치·공시하는 기업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여부를 'O/X'로 기재하도록 한 표준화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양식의 적용 2년차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준과 공시 요건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공시체계를 정비한 결과로도 해석됨

<그림 4> FY2024 vs. FY2023 KOSPI200 기업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수 ⁴⁾



4)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FY2023-FY2024 KOSPI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사업보고서' 및 동 보고서 부속서류인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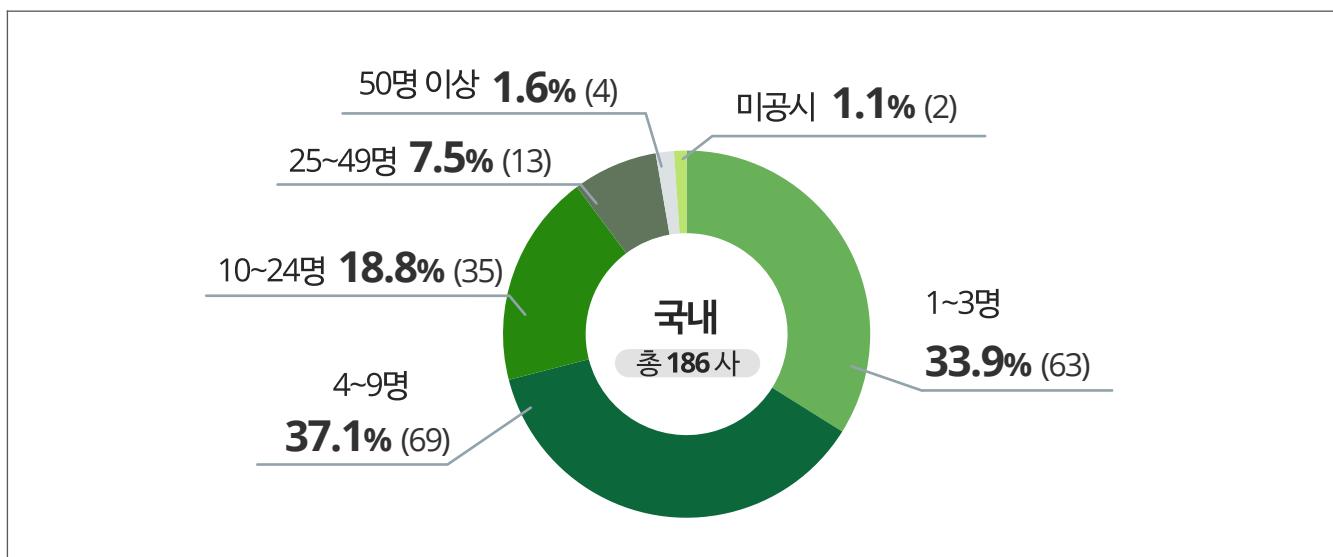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2) 내부감사부서 인원 수

-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86사의 내부감사부서 인원 규모는 4~9명 규모가 69사(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1~9명 구간이 71%에 이르러, 국내 상장사의 내부감사부서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인력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3명 규모의 소규모 조직은 63사(33.9%)이며, 10~24명 규모는 35사(18.8%), 25~49명 규모는 14사(7.5%)로, 50명 이상 대규모 조직은 3사(1.6%)로 분포함

<그림 5> FY2024 KOSPI200 기업 내부감사부서 인원 수 ⁵⁾



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FY2023-FY2024 KOSPI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사업보고서' 및 동 보고서 부속서류인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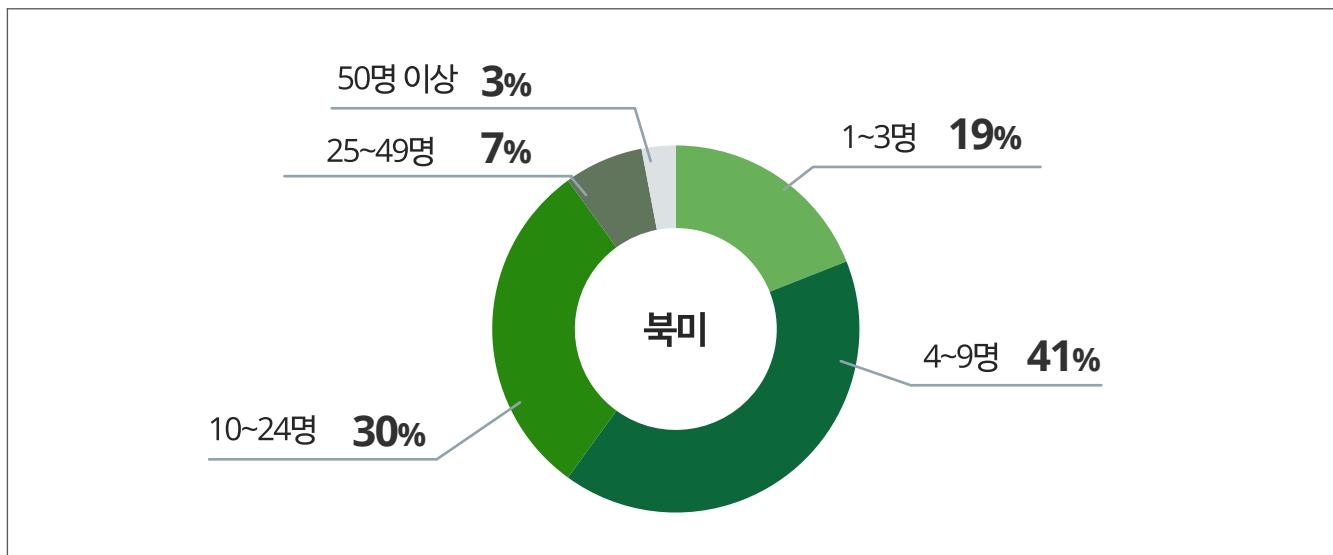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3) 글로벌 내부감사부서 인원 수

- FY2024 기준, 북미 기업의 경우, 4~9명(41%) 및 10~24명(30%) 구간의 비중이 높아, 중규모 이상의 내부감사 조직을 보유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3명 규모의 소규모 조직은 19%이며, 25~49명 규모는 7%, 50명 이상 대규모 조직은 3%로 분포함

<그림 6> FY2024 북미 기업 내부감사부서 인원 수⁶⁾



- 이러한 차이는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범위, 감사위원회 중심 운영체계의 성숙도 등에 기인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기업도 내부감사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체계 등을 고려할 때 내부감사부서의 적정 인력 확보가 독립성·전문성·내부감사 품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6)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5 North American Pulse of Internal Audit」, 2025, 북미(미국 85%, 캐나다 10% 등) 내부감사인 405명 대상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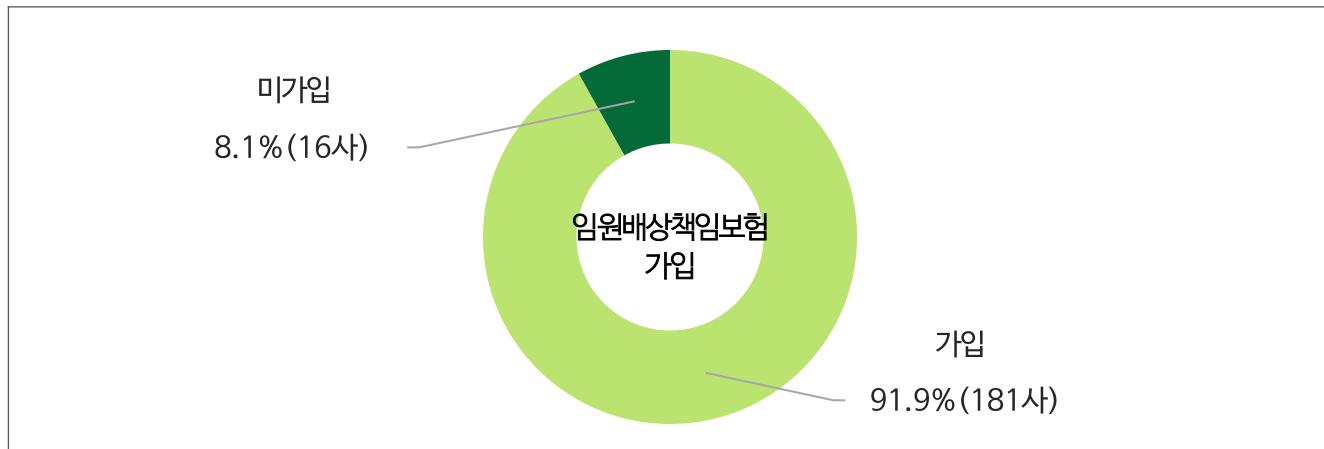
임원배상책임보험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시행 등으로 경영 판단에 대한 임원의 법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확대되고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 다만 동 보험은 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이사 책임 회피 수단으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함께 마련될 것이 권장됨

1) 국내 현황

- FY2024 기준, KOSPI200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81사(91.9%)로, 대다수가 해당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 8)}
 - 반면 16개사(8.1%)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FY2024 기준, KOSPI200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181사 가운데 이사 책임회피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업은 118사(65.2%)로 나타남⁹⁾
 - 이사의 책임 회피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63사(34.8%)임

<그림 7> FY2024 KOSPI200 기업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10, 11)}



7,1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FY2024 KOSPI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조사함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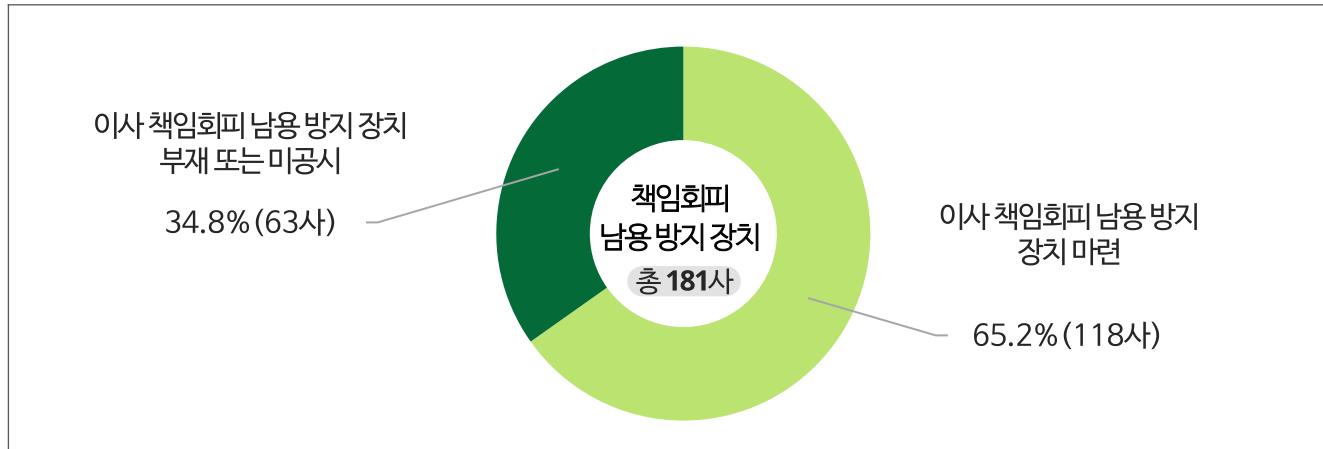
8,11) FY20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9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9) 보험 자체적으로 보상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그림 8> FY2024 KOSPI200 임원배상책임보험 이사 책임회피 남용 방지 장치 마련 현황 ^{12,13)}



-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보험료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손해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수입보험료는 약 5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한 반면, 손해액은 약 2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배 급증함
 - 2023년 경과보험료 기준 손해율은 50.3%를 기록하여, 2021년(7.2%) 및 2022년(9.6%) 대비 대폭 상승함
- 2021~2023년 3개년 실적을 비교하면, 계약 규모보다는 손해 발생의 변동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 건수 및 보험료는 3개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들어 보험금 지급과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형식적 제도 운용을 넘어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이사의 책임범위 확대, 소송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기업은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보장범위, 한도 구조 및 이사 책임 회피 남용 방지 장치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표 3> 임원배상책임보험 연도별 실적 ¹⁴⁾

(단위 : 건, 천원, %)

구분	계약 건수	수입보험료	경과보험료 ¹⁵⁾	사고 건수	보험금	손해액 ¹⁶⁾	손해율
2021년	1,716	55,996,505	54,978,729	67	19,549,575	3,935,656	7.2
2022년	1,775	53,972,193	55,405,292	122	3,421,931	5,309,505	9.6
2023년	1,645	56,176,445	54,784,600	69	15,456,202	27,573,767	50.3

1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FY2024 KOSPI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조사함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13) FY20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9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4) 보험개발원,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연도별 실적 현황」, 2025.06.

15) 경과보험료 = 수입보험료 + 전기이월 미경과보험료 - 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

16) 손해액 = 보험금 - 전기 지급준비금 환입 + 당기 지급준비금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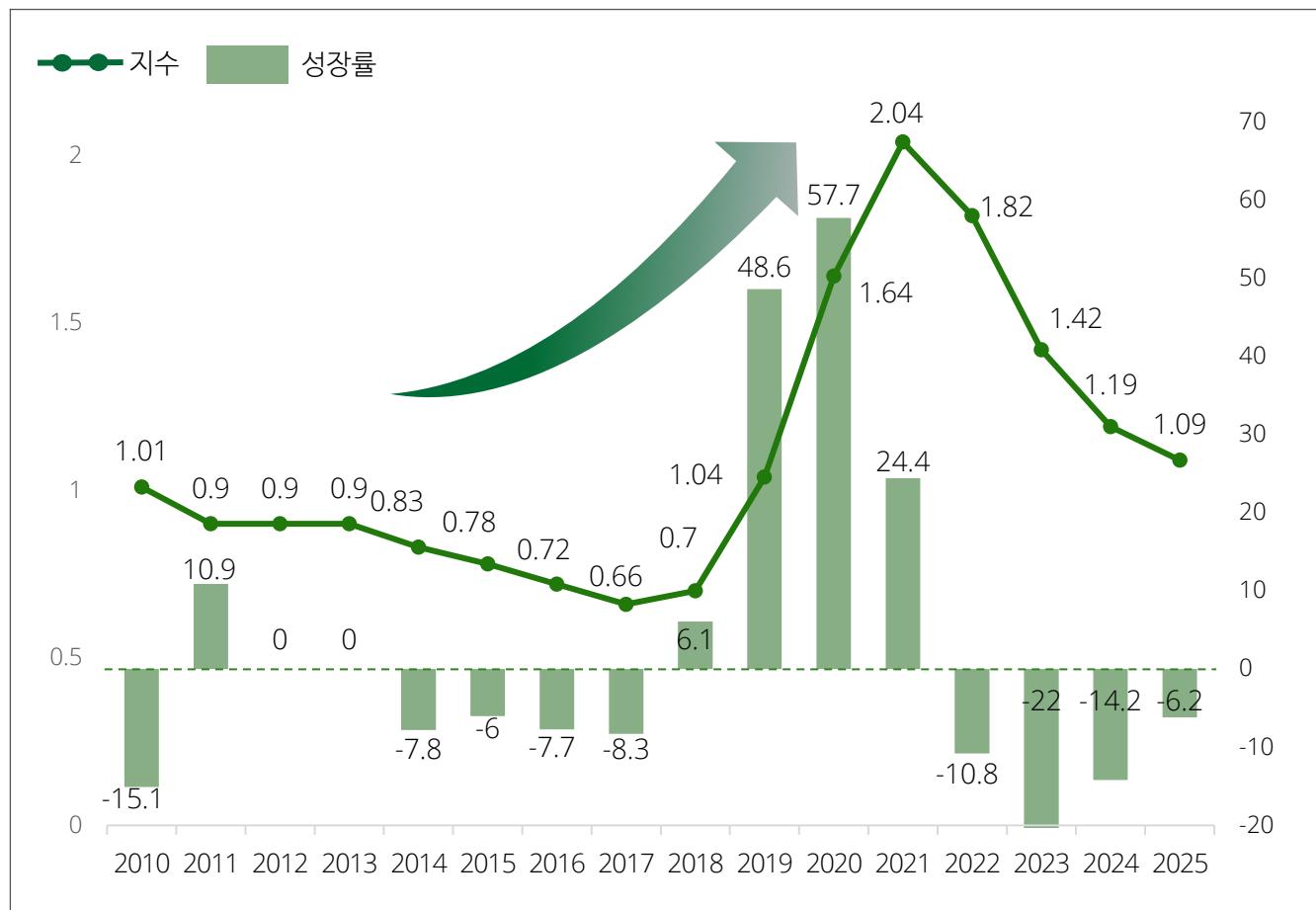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2) 글로벌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 2017년 이후 미국 내 상장회사의 건별 평균 집단소송액이 증가하면서, 2010년~2018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는 2019년~2023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9> 미국 연간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 추이: 2010~2025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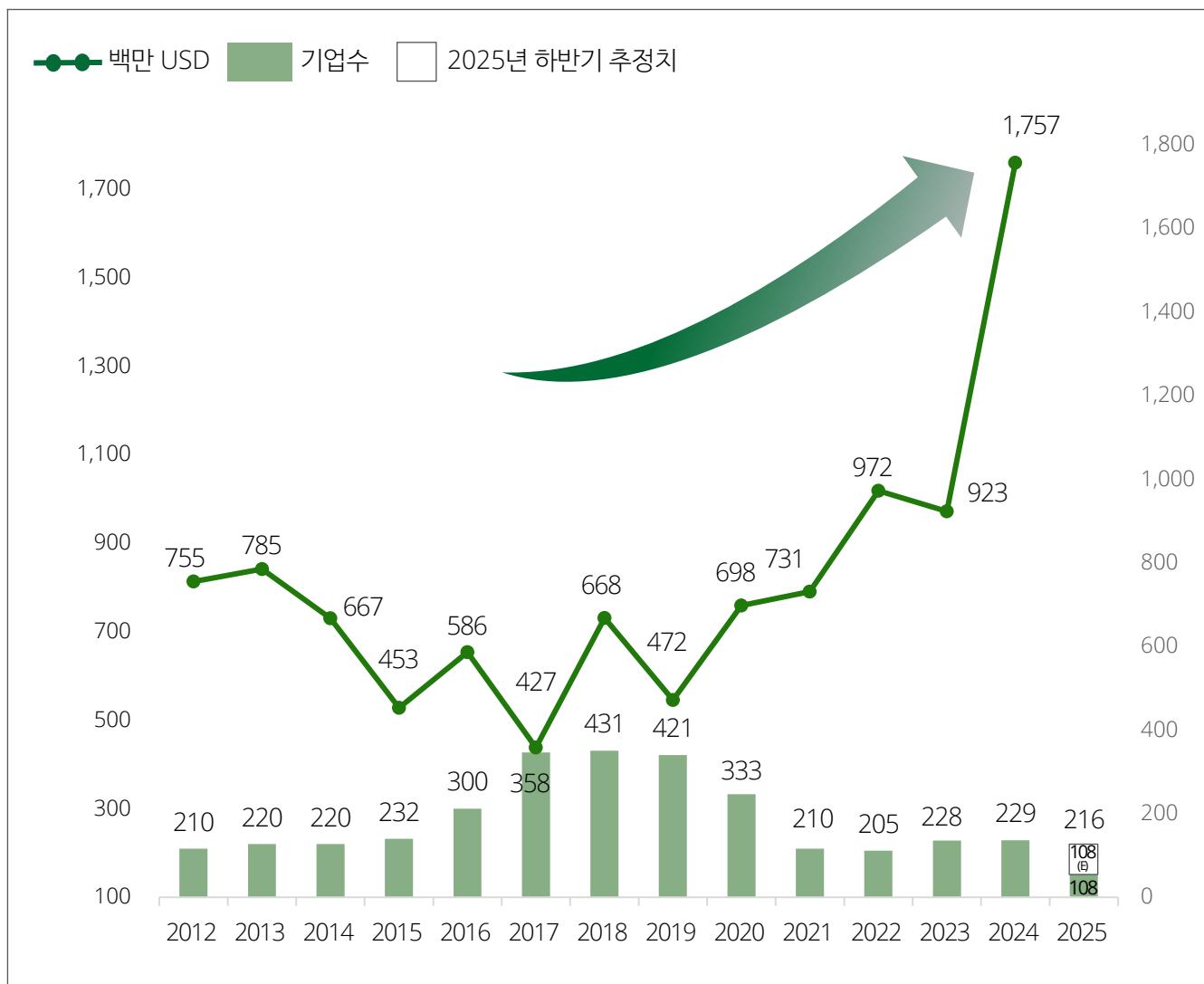


17) AON, 「Quarterly D&O Pricing Index」, 2025. Q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총보험료/총보장 한도의 가중평균으로 2001년을 기준연도로 삼음 (2001년 지수는 1임)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4. 이사회 운영

<그림 10> 미국 연간 상장회사 집단소송 제기 건수 ('12~'25) & 건당 투자자 평균 피해규모 ('12~'24)^{18, 19)}



18) NERA Economic Consulting, 「Recent Trends in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 2024 Full-Year Review」, 2025.01.22

19) NERA Economic Consulting, 「Recent Trends in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 H1 2025 UPDATE」, 2025.07.29..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5. 이사회 독립성

1) 설명

- 개정상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독립이사제의 도입은 단순한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독립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및 규범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음
 - 일원화 이사회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이사회의 객관성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음¹⁾
 - 두 직책의 분리는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적절한 권력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이사회의 책임성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된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는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
 - 국내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을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할 것을 권고하며,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²⁾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세부원칙 4 - 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p>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p> • (세부원칙 4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p>(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p> <p>(6) 선임(先任)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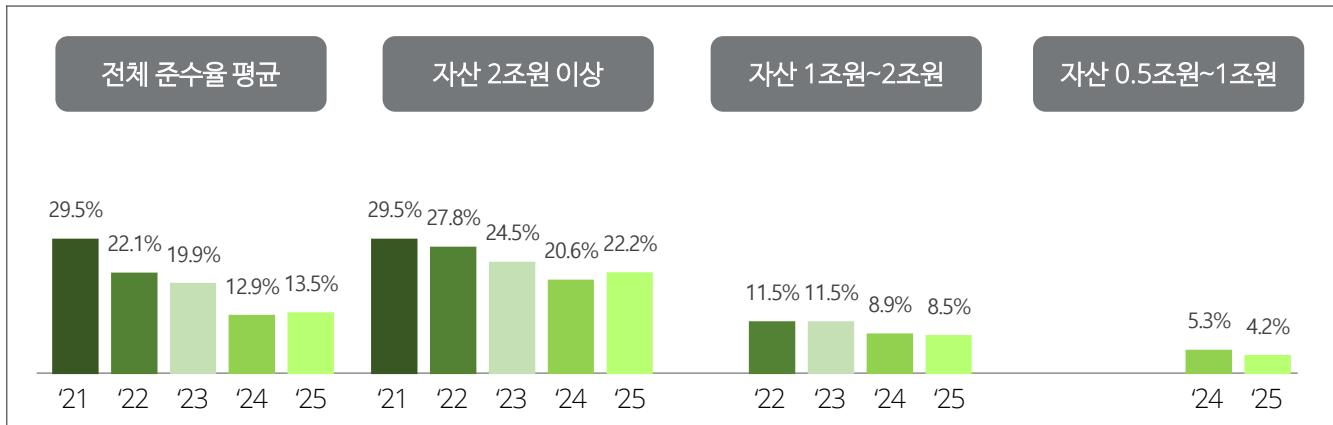
1) OECD (2025),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66bd0e3-ko>.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03. 지배구조 모범규준: ② 이사회 리더십 >> 5. 이사회의 운영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5. 이사회 독립성

<그림 1>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³⁾



- 2025년 기준 전체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3.5%로 전기 대비 0.6%p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2.2%로 전기 대비 1.6%p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5%로 전기 대비 0.4%p 소폭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2%로 전기 대비 1.1%p 감소함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는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 강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중시하는지 또는 전략적 협조와 운영 효율성을 우선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가됨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의 선임이 권고되며,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는 별도로 선임되어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 및 이사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함
-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준수율은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사회 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요구됨

3)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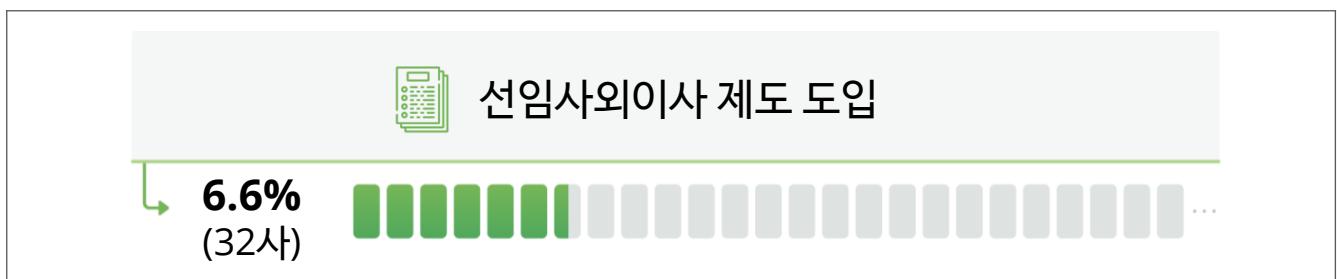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5. 이사회 독립성

2) 선임사외이사 선임

-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CEO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하여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국내 금융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그림 2> 유가증권 상장법인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현황⁵⁾



- FY2023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상장법인 중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상장법인은 32사(6.6%)로 나타났음
- 자산규모별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중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22사(1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은 5사(4.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은 5사(3.3%)로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3> 유가증권 상장법인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현황 – 자산 구분별⁶⁾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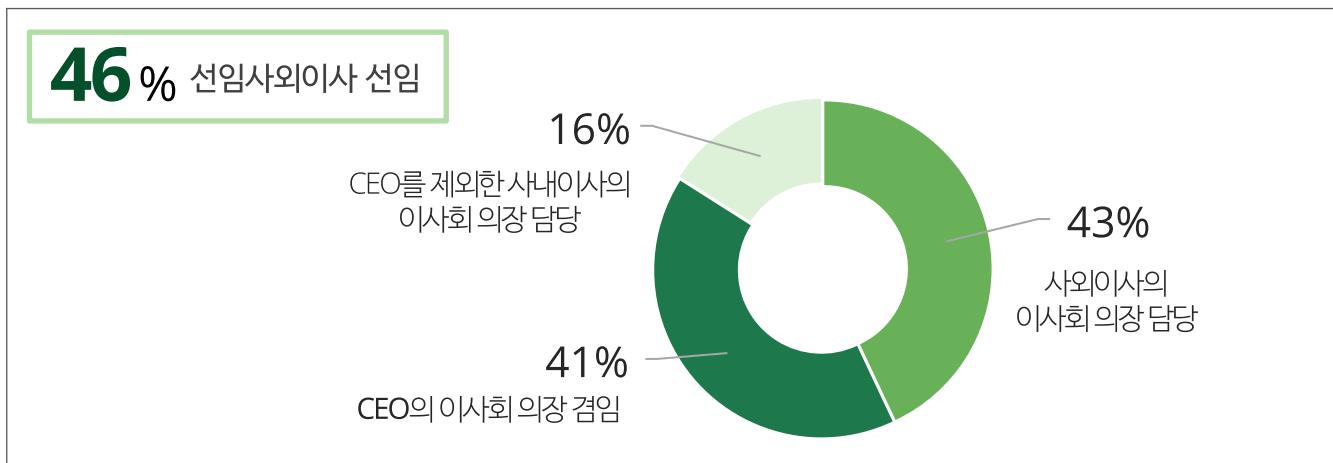
5), 6)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상장법인(비금융) 488사를 조사대상으로 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5. 이사회 독립성

- FY2023 기준, 국내 상장회사 중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6.6%(32사)에 불과한 반면, 글로벌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비율이 43%,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구조가 비교적 정착되어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실질적인 대안적 거버넌스 장치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기업 역시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선임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와 운영 개선이 필요함

<그림 4> 글로벌 이사회 리더십 구조⁶⁾



6)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oard Practices Quarterly - Evolving lines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board and management」, 2024.03.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사외이사 전문성

1) 사외이사 자격요건

- 이사회 전문성이란 이사회가 기업의 전략, 리스크, 재무보고 및 주요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감사위원회 전문성은 그중에서도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와 내부통제·리스크 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의미함
- 사외이사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요건은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회계·재무 전문가의 정의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함
 -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에 대한 공시는 의무사항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함
- 이와 같이 국내 감사위원의 경우 자격·학위·경력 등 객관적 요건 중심의 자격요건이 중시되고 있어,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는 이사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재무보고 및 감독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1> 회계·재무전문가 요건²⁾

1. 회계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금융기관·정부·증권 유관기관 경력자 금융기관 정부 증권 유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2)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 FY2024 기준, 감사위원의 주요 전문성 분포를 살펴보면 '재무·회계'(41.2%, 254명), '학계'(25.1%, 155명) 및 '법률'(13.3%, 82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 FY2022-FY2024 KOSPI200 기업 감사위원회 전문성 분포 ³⁾

구분	FY2022		FY2023		FY2024		전기 대비
	수(명)	비중(%)	수(명)	비중(%)	수(명)	비중(%)	
재무·회계	237	41.5%	245	42.4%	254	41.2%	▼ 1.2%p
학계	129	22.6%	105	18.2%	155	25.1%	▲ 6.9%p
법률	100	17.5%	97	16.8%	82	13.3%	▼ 3.5%p
재계	50	8.8%	60	10.4%	65	10.5%	▲ 0.1%p
관료	22	3.9%	44	7.6%	49	7.9%	▲ 0.3%p
언론·홍보	8	1.4%	8	1.4%	5	0.8%	▼ 0.6%p
기타	25	4.3%	19	3.2%	7	1.2%	▼ 2.0%p
소계	571	100.0%	578	100.0%	617	100.0%	-

- FY2024 기준, 상법에서 구분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33.7%, 91명) 및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32.6%, 88명)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 FY2022-FY2024 KOSPI200 기업의 상법에서 구분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유형 ^{4,5)}

구분	FY2022		FY2023		FY2024		전기 대비
	수(명)	비중(%)	수(명)	비중(%)	수(명)	비중(%)	
1호 유형 : 공인회계사	51	21.5%	54	22.0%	74	27.4%	▲ 5.4%p
2호 유형 :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	92	38.8%	97	39.6%	88	32.6%	▼ 7.0%p
3호 유형 :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	12	5.1%	11	4.5%	17	6.3%	▲ 1.8%p
4호 유형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82	34.6%	83	33.9%	91	33.7%	▼ 0.2%p
소계	237	100%	245	100%	270 ⁶⁾	100%	-

3,5) 딜로이트 안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 200 FY2024, FY2023,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학계' 분류의 경우 '재무 또는 회계' 출신 인물은 제외하고 산정함

4)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따른 구분

6) 복수(2개) 유형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례 16건이 포함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2) 글로벌 사외이사 전문성

- 해외 주요국은 회계전문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NYSE 및 NASDAQ은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 전문자격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 등도 감사위원회에 회계·감사에 대한 '실질적 경험' 또는 '재무적 이해력'을 갖춘 구성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주요국의 규제 체계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 해외 주요국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전문가 자격 요건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X법에 따라 재무전문가 최소 1인 존재 여부에 대한 이사회 결정 공시 요구⁷⁾, 회계 및 감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험이나 실질적 이해도 요구 • NYSE 상장규정은 재무적 이해력 및 회계 또는 관련 재무관리 전문지식 요구⁸⁾ • NASDAQ 상장규정 재무제표 이해도 및 회계·재무 관련 자격 또는 경력 요구⁹⁾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C(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최신 재무 경험 보유자 1인 이상 포함¹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재무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 포함¹¹⁾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감사위원이 재무적 이해력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성 요건 구체화¹²⁾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재무 전문성과 산업 이해 요구¹³⁾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인은 회계·감사에 대한 역량 보유¹⁴⁾

-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는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무보고 기준, 회계기준 및 관련 규제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이사회는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계계획 수립 시 회계·재무 전문성의 확보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감사위원장은 회계·재무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이사회·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함

7) Sarbanes-Oxley Act, 229.407(d)(5)(i),(ii)

8)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a),Commentary

9) NASDAQ Listing Rule 5600, 5605(c)(2)(A)(iv)

10)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Section 2.15

11)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원칙 4.11

12) National Instrument, PART 3. 3.8 & Audit Committee Guide, CHAPTER 3

13) 호주증권거래소,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권고사항」, Principle 4. Recommendation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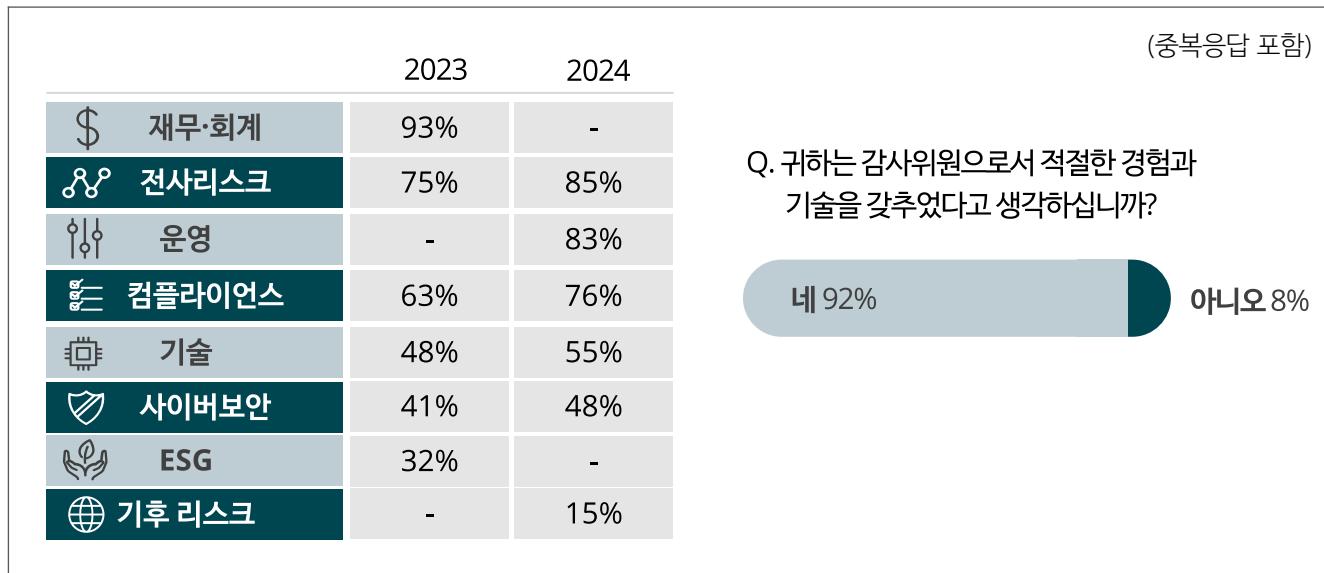
14) EU 감사위원회 관련 지침: Directive 2014/56/EU, Article 39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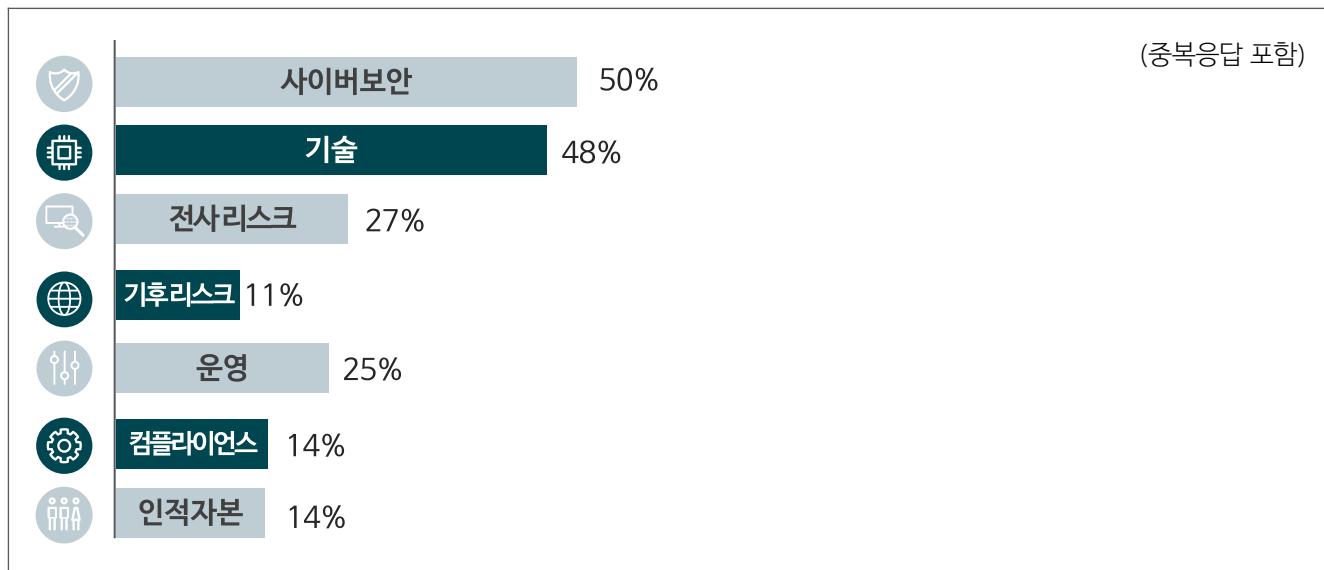
-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전통적인 핵심 감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갖춰져 있는 반면, 기술, 사이버보안, ESG 및 기후리스크 관련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나 전기 대비 사이버보안, 전사 리스크의 전문성은 보완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글로벌 감사위원회 감독 영역별 전문성 보유 현황^{15,16)}



-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리스크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사이버보안 및 기술 등 영역의 전문성 확보 수요가 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글로벌 감사위원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보완 필요 영역¹⁷⁾



15)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제3판, 2024, 미국 기반 대규모 상장법인 감사위원 266명 대상 (응답자의 74%는 미국 상장법인 소속이며, 81%는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16)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제2판, 2023, 미국 기반 대규모 상장법인 감사위원 164명 대상 (응답자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17)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제4판, 2025, 미국 기반 대규모 상장법인 감사위원 237명 대상 (응답자의 86%는 미국 상장법인 소속이며, 72%는 시가총액 20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Board Skills Matrix(이사회 역량 진단표)

1) BSM 도입 현황

- Board Skills Matrix(이사회 역량 진단표, 이하 'BSM')는 이사회의 구성, 역량(경험·전문성·지식 등) 및 다양성(성별·연령 등) 정보를 표·그림으로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도구임
 - 개별 이사의 경력·자격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의 전략 방향·사업 복잡성·리스크 특성에 비추어 이사회가 집단적으로 요구 역량을 충족하는지(집합적 정합성)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BSM은 이사회 보유 역량과 미충족 영역(gap)을 가시화하여 신규 이사 선임, 승계계획, 위원회 구성 등 핵심 의사결정에 참고 기준을 제공함
- BSM 공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금융사 및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 역량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가 확대되며 공시·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임
 -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통해 BSM을 활용한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강조하고, BSM 작성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표 4>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요약 - BSM 관련 사항 (2023.12)¹⁸⁾

구분	내용
원칙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집단적으로 은행 규모, 복잡성, 리스크 프로파일에 상응하는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원칙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BSM을 작성하고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M의 작성, 평가,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승계계획과 연계 - 구체적 기준: ①필요 역량 분류 ②전문성 판단 기준 ③작성 주체 및 점검 주체 ④검토 주기 ⑤활용 영역(승계계획과의 연계 등) ⑥해당 역량 분야 충분성 판단 기준, ⑦집합적 정합성 여부 판단 등

18) 금융감독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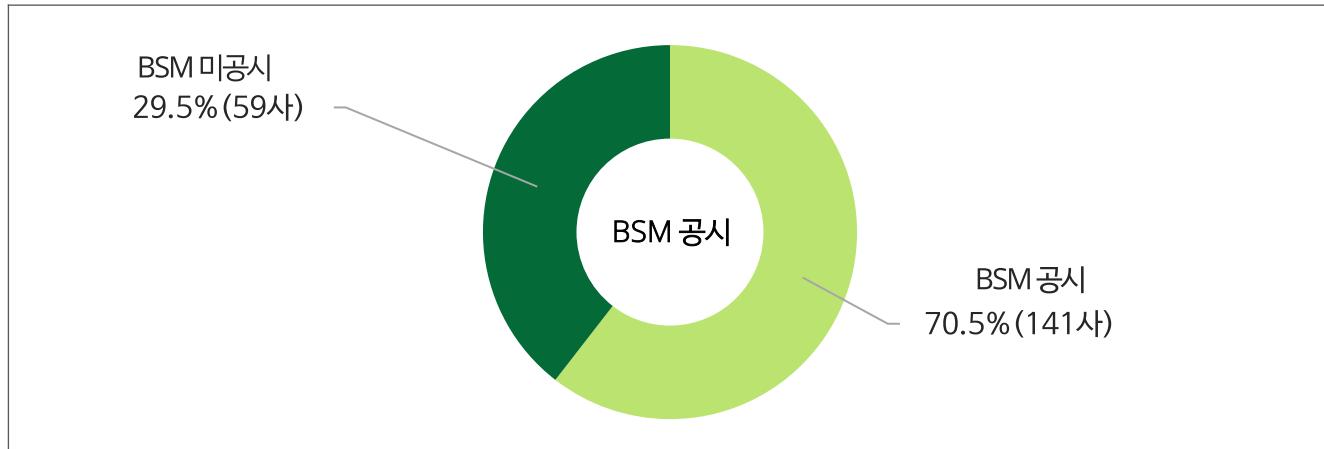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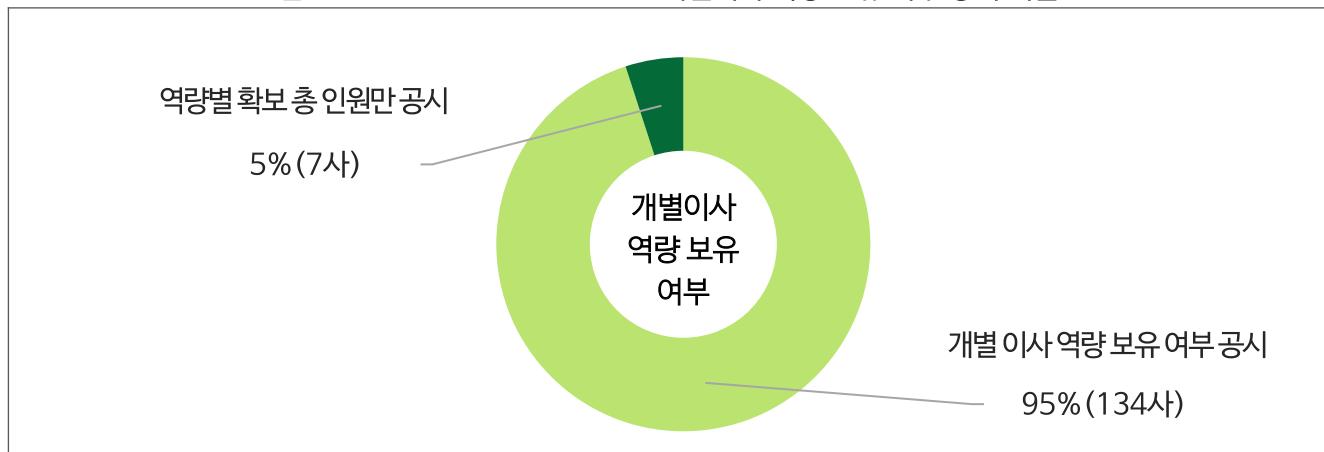
□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 중 BSM을 공시한 기업은 141사(70.5%)로, 과반 이상이 도입·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19, 20)}

- 이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일부 금융지주 및 대기업에 국한되었던 BSM 공시가 빠르게 확산된 결과로, BSM이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공시의 주요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함
- BSM을 공시한 기업의 95%(134사)는 이사별 역량 보유 여부를 공개하였으나, 5%(7사)는 역량별 확보 총 인원만 제시하여 개별 이사의 해당 역량 확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공시방식은 주로 표로 도식화되며, 일부는 아이콘 또는 수준별 점수 표시 등을 통해 시각적 명확성을 강화함
- 이사회 구성 현황 설명과 함께 BSM 도식이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BSM에 대한 설명 및 이사회 구성·선임·승계 등 실질적 의사결정과의 연계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부족한 사례가 다수로 나타남

<그림 4> FY2024 KOSPI200 BSM 공시 기업 수



<그림 5> FY2024 KOSPI200 BSM 개별이사 역량 보유 여부 공시 비율²¹⁾



19) 딜로이트 안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2024년 말일 기준의 KOSPI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회사 홈페이지'를 조사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참고함

20) BSM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 사례만 포함하였으며, 단순히 작성 사실만 언급하고 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BSM 공시로 간주하지 않음

21) BSM을 공시한 141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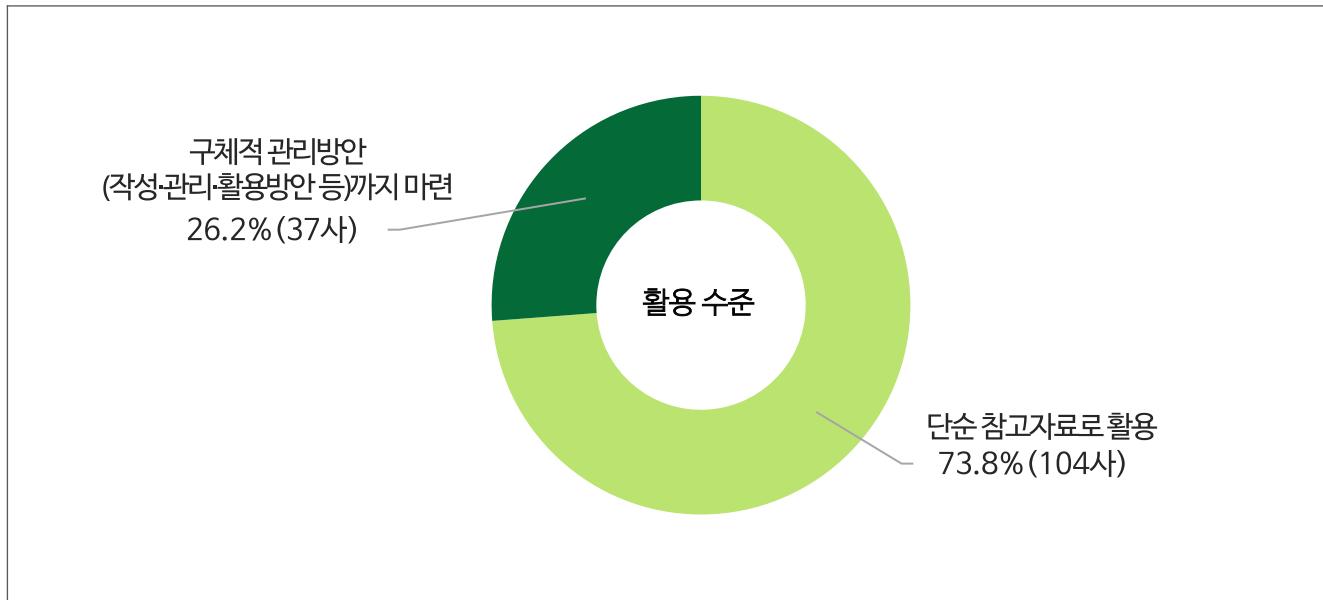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2) 활용 수준

-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 중 BSM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BSM의 작성·관리·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까지 마련한 기업은 37사(26.2%)에 그치며, 나머지 104사(73.8%)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다수 기업이 이사 역량을 표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방안, 실제 선임 및 승계계획과 연계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반면, 일부 선도 기업들은 구체적인 BSM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신임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반영하는 등 BSM을 실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있음
 - S사는 필요 역량 분류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사별 보유 역량을 평가 및 공시하며, 이를 신규 이사 선임 및 승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O사는 신임 이사 후보 추천 시 BSM을 고려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BSM을 공개함으로써 후보자의 역량이 기존 이사회 구성과 어떠한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6> FY2024 KOSPI200 BSM 활용 수준²²⁾



22) BSM을 공시한 141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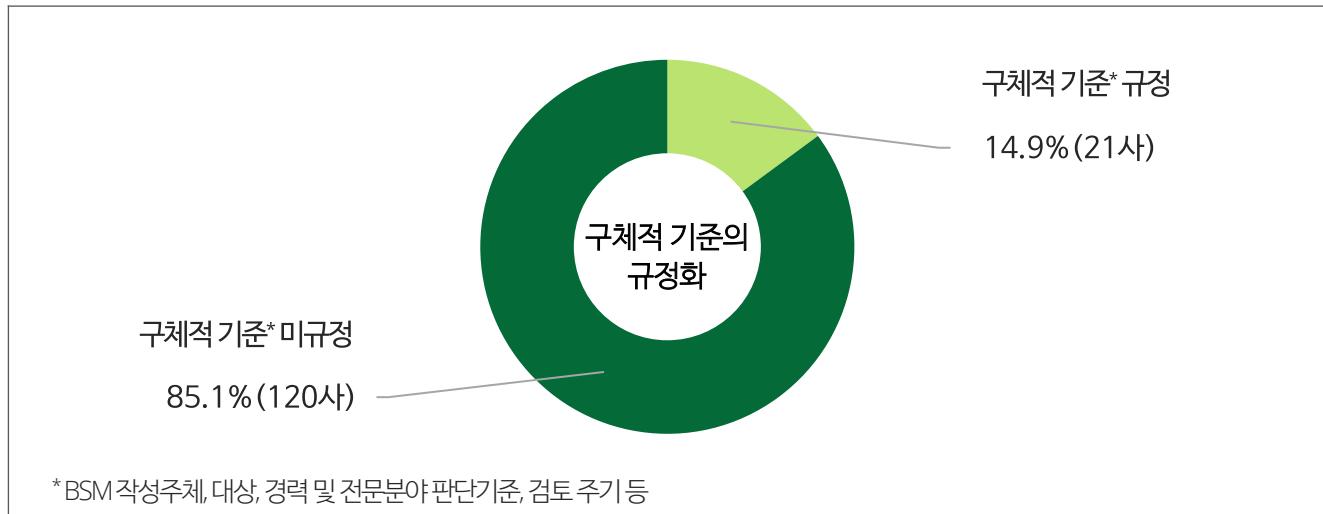
- 금융회사의 경우 모범관행의 영향으로 BSM의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W사는 필수·세부역량 층별 여부를 평가해 승계계획·이사 선임에 직접 활용함
 - H사는 이사회 차원에서 BSM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후보 추천 및 승계계획과의 연계를 제도화함

□ 금융권을 중심으로 BSM이 실질적 활용 및 기업 지배구조의 관리 도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비금융권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이사회 선임·승계·후보군 관리에 연계되는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구체적 기준의 규정

- FY2024 기준, KOSPI200 중 BSM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BSM의 작성주체, 대상, 경력 및 전문분야 판단기준, 검토 주기 등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기업은 21사(14.9%)에 그쳤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은 기업은 120사(85.1%)로 나타남
 - D사는 필요 역량을 7대 영역으로 정의하고, 매년 정기 점검한다고 명시해 절차적 관리체계를 갖춘 사례임
 - 반면, 다수는 이사별 보유 역량 현황만 제시하고, 작성주체·평가기준·검토주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금융사는 모범관행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정화를 보였으며, 일부는 필요 역량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매년 이를 점검한다고 명시하며, 후보군 관리 및 승계계획 등과 연계하는 BSM 활용 절차를 공시함
- 전반적으로 국내 BSM 공시는 외형적 형식에 머무는 경향이 나타나며, 금융권 모범관행을 참고하여 작성·점검주체의 명확화, 전문성 기준, 검토 주기 설정 및 승계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7> FY2024 KOSPI200 BSM 구체적 기준의 규정화 여부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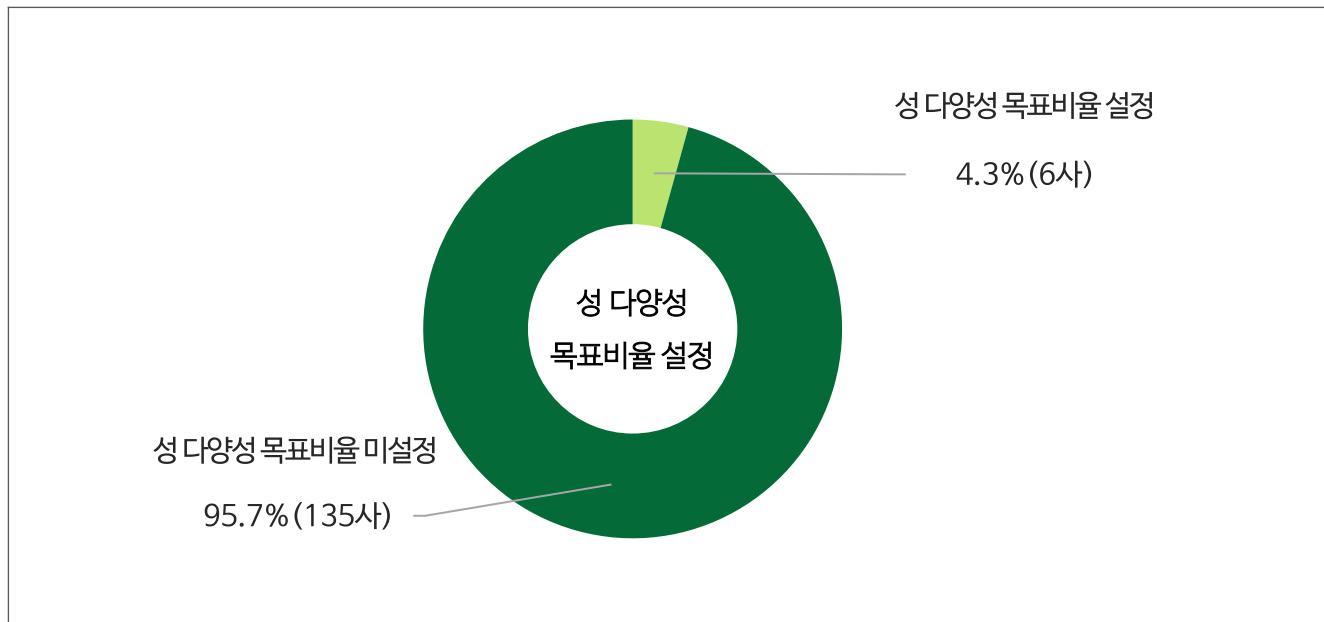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4) 성 다양성 목표비율 설정

- FY2024 기준, KOSPI200 중 BSM에 성별 현황을 반영한 기업은 59사(29.5%)로 나타남
 - BSM은 이사회의 역량뿐 아니라 성별·연령 등과 같은 다양성 정보도 함께 표기하는 도구로, 글로벌 BSM 공시에서도 다양성 속성이 함께 공시되고 있음
-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확보의 중·장기적 추진을 위해 성별 등 다양성 목표비율을 설정하기도 하며, 이는 BSM 활용의 확장적 요소로 볼 수 있음
 - 일부 해외은행의 경우 이사회 다양성 정책 등으로 여성이사 목표비율을 40%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규정을 채택한 사례가 존재함
- FY2024 기준, BSM을 공시한 기업 중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성 다양성 목표비율을 공시한 기업은 6사(4.3%)에 불과하며, 성 다양성 목표비율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135사(95.7%)로 나타남^{24,25)}
 - 대부분은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법령 준수를 위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금융사는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에 여성 후보자 20% 이상 반영을 명문화한 사례가 있음

<그림 8> FY2024 KOSPI200 BSM 성 다양성 목표비율 공시 현황



24)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성 다양성 목표비율을 설정한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음
 25) KOSPI200 기업 중 1사(0.5%)는 BSM을 미공시했으나 성 다양성 목표비율은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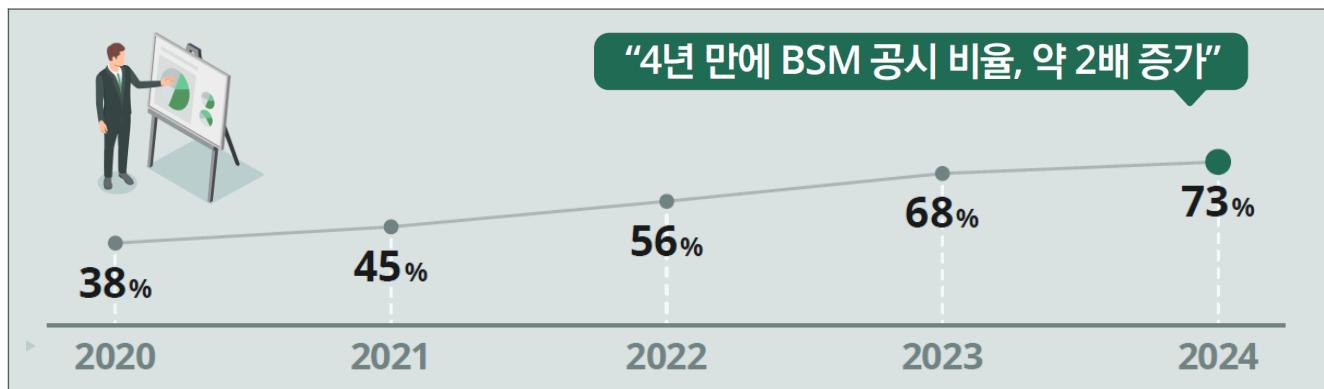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5) 글로벌 BSM 공시 현황

- 글로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BSM 공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들은 BSM을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글로벌 BSM 공시 비율은 2020년 38%에서 2024년 73%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단순 공시 수준을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 기반 자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함
- 선진 금융기관은 BSM 활용 시 작성 주체, 전문성 기준, 검토 주기 등 내부 관리체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미국, 호주 등의 글로벌 상장사는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성별 다양성 목표 설정, 위원회 구성 기준 설정 등에 BSM을 활용하는 경우가 확산되는 추세임

<그림 9> 글로벌 BSM 공시 비율²⁶⁾



- 글로벌 기업들의 BSM 공시는 전략적 활용과 투명성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예컨대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필요 역량의 반영, 역량 기술 방식의 정량화 및 구체화의 확대 등을 선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글로벌 BSM 공시에서 주목할 공시 사례는 아래와 같음

<표 5> 글로벌 BSM 공시 사례^{27, 28, 29)}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역량 항목을 회사의 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서술 • 전략 변화에 따른 신규 역량 강조 공시 증가 (예: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보유 이사 영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보강 시 매트릭스에 'New' 표기 사례 등장 → GE 등 일부 기업은 향후 필요 역량 명시 • 특정 역량 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사례 확산 (예: "IT 업계 20년 경력")

26) Spencer Stuart, 「2024 U.S. Spencer Stuart Board Index」, 2024.09.
27,28,29) 2022-2023년 HP, Healthpeak 및 GE의 Proxy Statement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는 모범규준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감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 이해도 제고, 효과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표 6> 감사위원회 교육 관련 국내 법규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p>(III.5.1 원칙)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p> <p>(III.5.2 교육유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위원 선임 후 제공되어야 하는 입문교육과 감사위원 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함</p> <p>(III.5.3 교육내용) 감사위원의 입문교육은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및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이슈 등 감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감사위원의 보수교육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포함해야 함</p>
지배구조 모범규준	<p>(2.5.10) 사외이사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에 임해야 함. 특히 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함</p> <p>(충분한 교육 기회) 이사는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함. 특히 신규 선임된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를 위해 기업은 이사의 역할 효율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p> <p>(4.1.3) (생략…)</p> <p>(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감사업무는 전문성을 요함. (생략…)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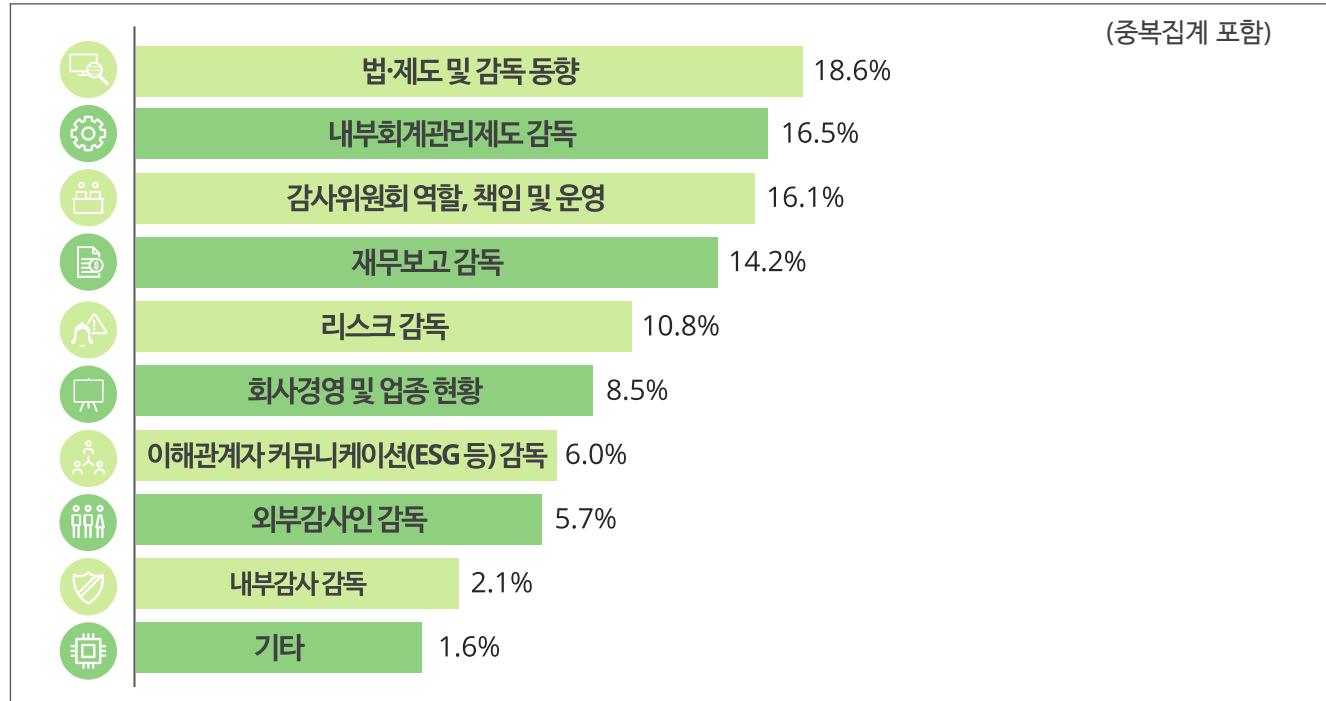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6. 이사회 전문성

1) 감사위원회 교육 주제

- FY2024 기준, 감사위원회 교육 주제별 집계 결과를 보면, '법·제도 및 감독 동향'(18.6%)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6.5%) –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16.1%) – '재무보고 감독'(14.2%) – '리스크 감독'(10.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상위 네 개 주제는 모두 감사위원회의 법적 책임과 핵심 감독 기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본적 책무 이행을 중심으로 교육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 '법·제도 및 감독 동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최근 회계·감사 관련 제도 개편, 감독당국의 점검 강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교육 수요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및 평가·보고 기준 적용에 대비해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은 신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교육의 핵심 주제로, 직무 수행의 기본 원칙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필수 항목임
 - '재무보고 감독'은 최근 발생한 대형 횡령·부정 사건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육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0> FY2024 감사위원회 교육 주제³⁰⁾



3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100 기업의 FY2024 사업보고서 내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를 참고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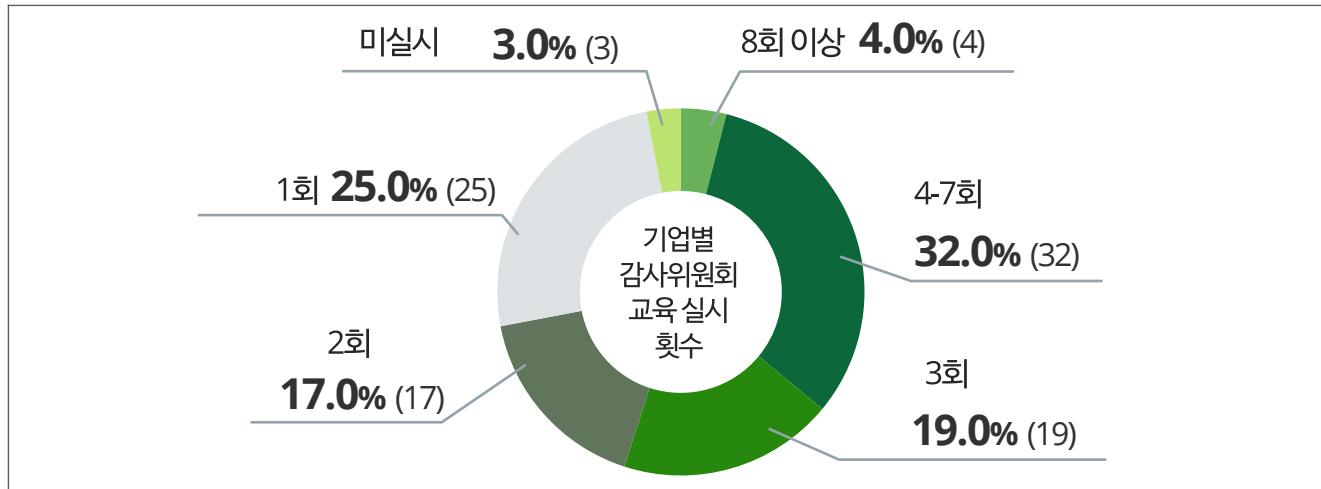
6. 이사회 전문성

2)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횟수

□ FY2024 기준,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횟수는 '4~7회'(32사, 32.0%) – '1회'(25사, 25.0%) – '3회'(19사, 19.0%) – '2회'(17사, 17.0%) – '8회 이상'(4사, 4.0%) – '0회'(3사, 3.0%) 순으로 조사됨

-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 36.0%를 차지하는 반면, 연 1회 이하도 28.0%로 나타나 교육 실시 수준에 있어 기업 간 편차가 확인됨
- 감사위원회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3사로 나타남

<그림 11> FY202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횟수 현황³¹⁾



□ FY2024 기준, 감사위원회 연평균 교육 실시 횟수는 3.2회로 나타남

31,3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KOSPI100 기업의 FY2024 사업보고서 내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7.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 다양성

- 이사회 다양성 확보란 연령, 성별, 출신, 국적, 전공, 학력, 경험, 경력 등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특히 이사회 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0이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됨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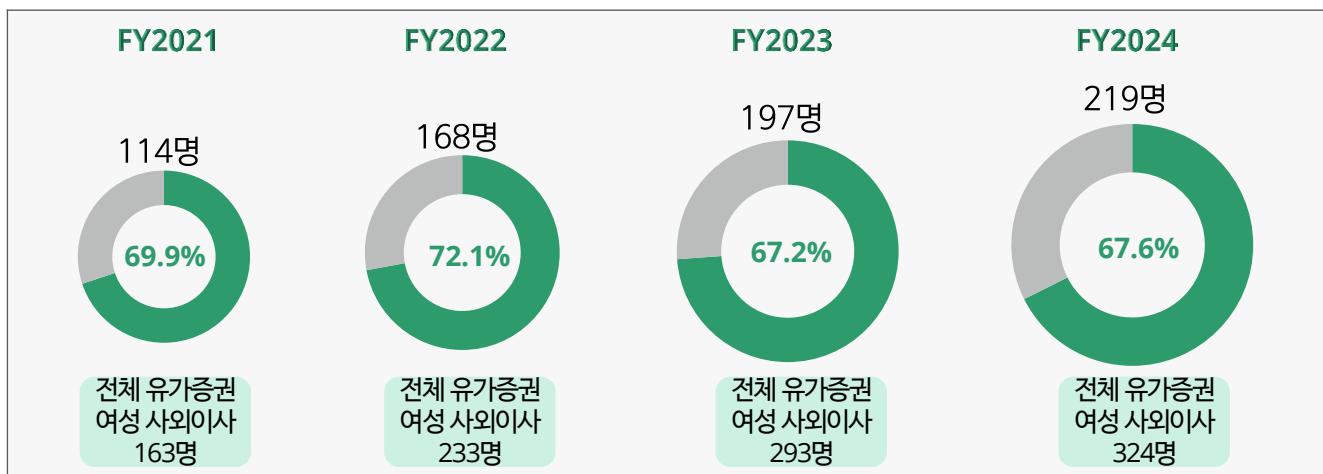
1) 유가증권 상장법인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

- FY2024 기준,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3.9%(324명)로 전기 대비 0.9%p 상승함
 - FY2022(10.8%, 233명) 대비 3.1%p 상승했으며 이는 2022년부터 발효된 자본시장법의 영향으로 여성 사외이사 선임의 중요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됨
 - 대다수 기업은 법 준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성 사내이사를 이사진으로 포함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여성 사외이사를 우선 영입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시킴

<그림 1> 유가증권 상장법인 FY2022 ~ FY2024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 ¹⁾



<그림 2> FY2022 ~ FY2024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수와 비중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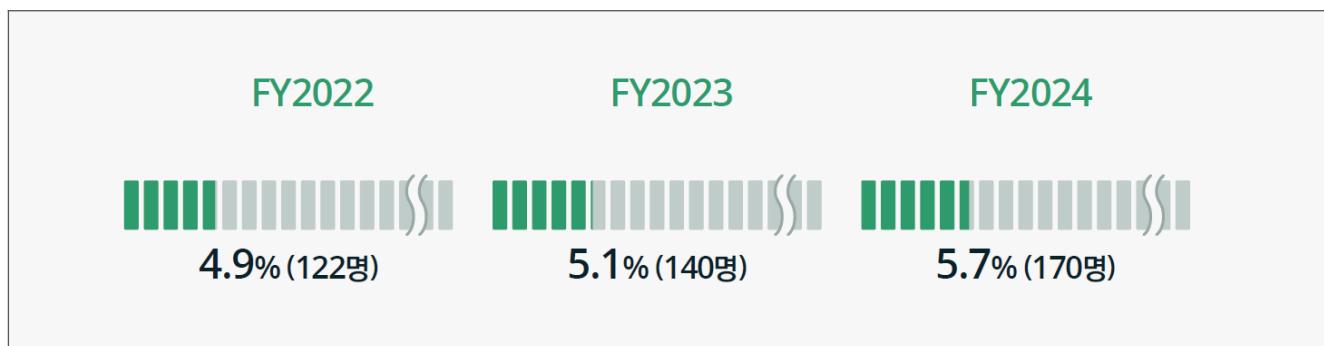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7. 이사회 다양성

2) 코스닥 상장법인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

- FY2024 기준, 코스닥 상장법인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5.7%(170명)로 전기 대비 0.6%p 상승함
 - FY2022(4.9%, 122명) 대비 0.8%p 상승함
 - 유가증권 상장법인 여성 사외이사(324명) 비중의 52% 수준이며, 코스닥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가 소수여서 법 준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상황임을 보여줌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 수는 3명임

<그림 3> 코스닥 상장법인 FY2022 ~ FY2024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 ³⁾



3)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여성 사내이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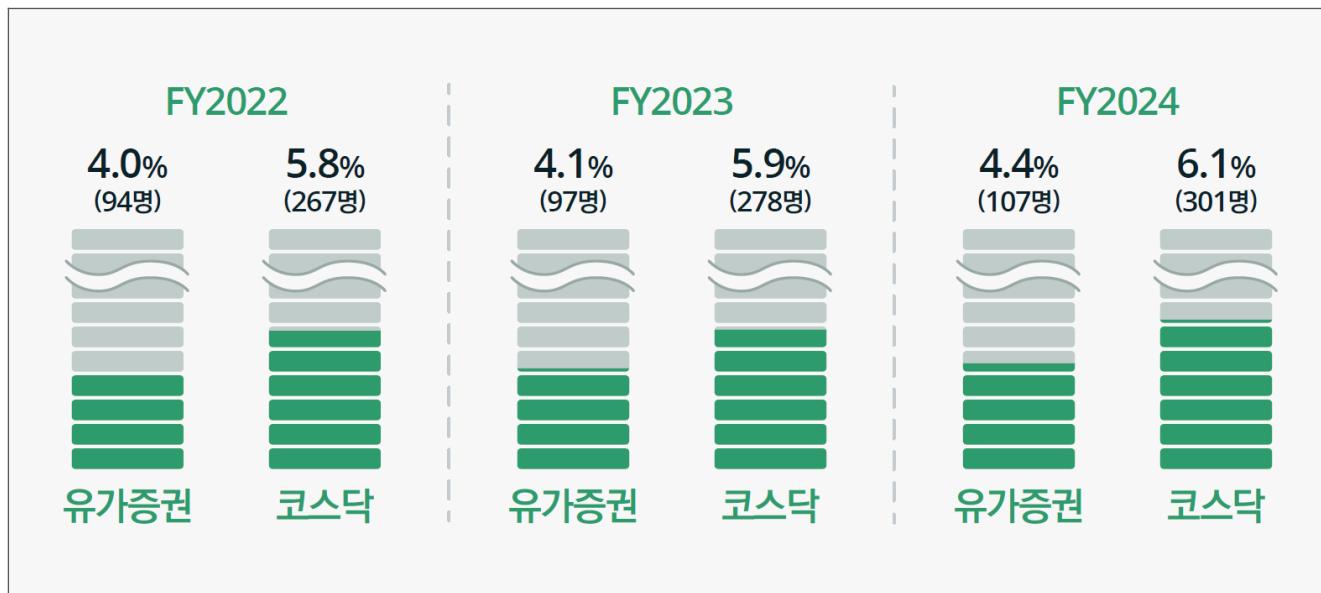
- FY2024 기준,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여성 사내이사 비중은 4.4%(107명)로 전기 대비 0.3%p 상승함
 - FY2022(4.0%) 대비 0.4%p 상승함
 - 여성의 사내이사 진입은 미흡한 상황이며 최근 여성 사외이사 비중의 약진과 비교할 때 변화가 미미함
- FY2024 기준, 코스닥 상장법인의 여성 사내이사 비중은 6.1%(301명)로 전기 대비 0.2%p 상승함
 - FY2022(5.8%) 대비 0.3%p 상승함
 - 코스닥 상장법인의 여성 사내이사 301명은 대표 본인, 대표의 가족, 친인척, 특수관계자 또는 계열사 임직원 등으로 분류되어 단순히 유가증권 상장법인 여성 사내이사 비중보다 수치가 크다고 기술하기엔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3) 코스닥 상장법인의 FY2022, FY2023 및 FY2024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정보(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주로 참고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7. 이사회 다양성

<그림 4>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FY2022 ~ FY2024 여성 사내이사 비중 추이⁴⁾



4)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의 FY2022, FY2023 및 FY2024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정보(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주로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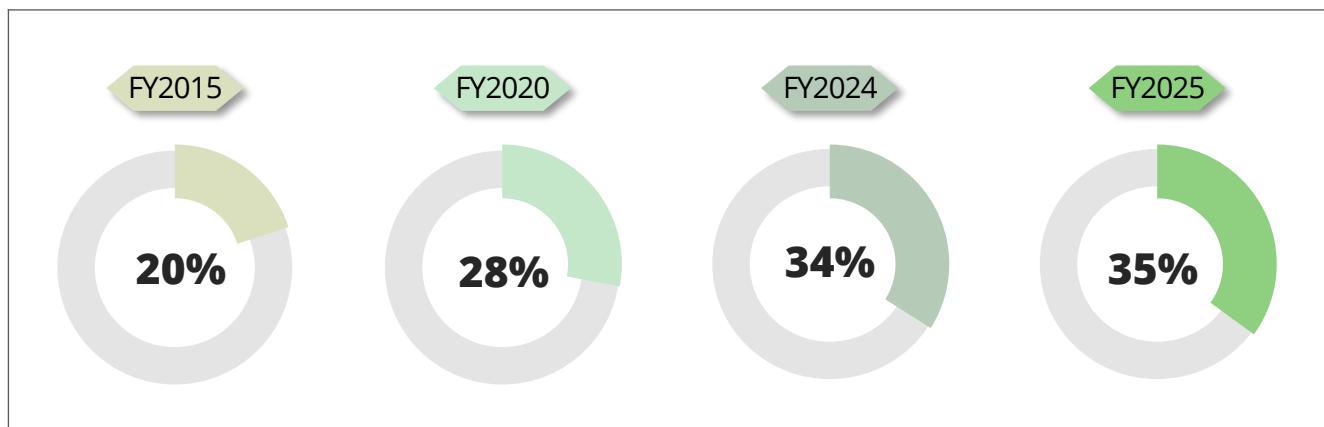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7. 이사회 다양성

4) 글로벌 이사회 여성 현황

- 국내 이사회 여성 비율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기업에서는 이사회 성 다양성이 구조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Regulation S-K에서 기업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양성 정책과 그 평가에 관해 공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 2025년 기준 S&P 500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35%로, 전년(34%)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020년(28%) 대비 약 7%p, 2015년(20%) 대비 약 15%p 증가한 수준임
 - 이사회 평균 여성 이사 수는 3.7명으로, 2020년(3.0명), 2015년(2.1명) 대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모든 S&P 500 기업 이사회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99%의 이사회는 2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5> S&P 500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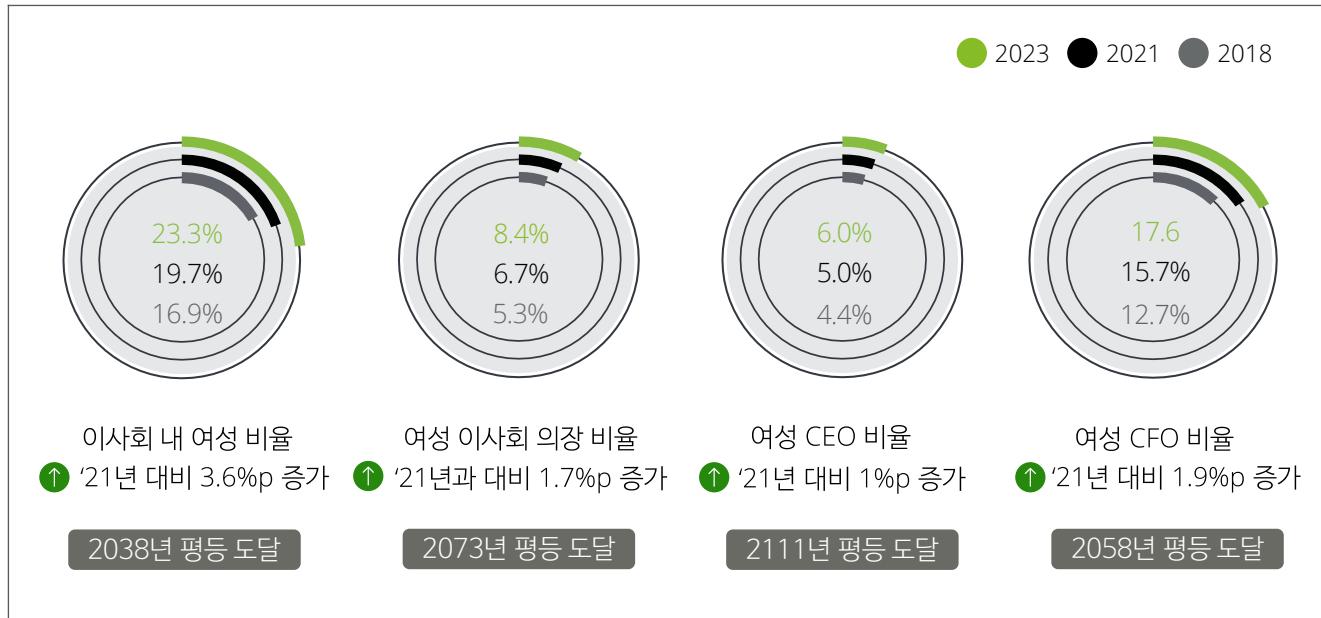
5) Spencer Stuart, 「2025 U.S. Spencer Stuart Board Index」, 2025.10.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7. 이사회 다양성

- 글로벌 이사회 여성 비율은 23.3%로 전 세계 이사회 의석의 4분의 1 미만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이사회 의장은 8.4%, 여성 CEO 비율은 6%에 불과함⁶⁾

<그림 6> 글로벌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내 여성 분포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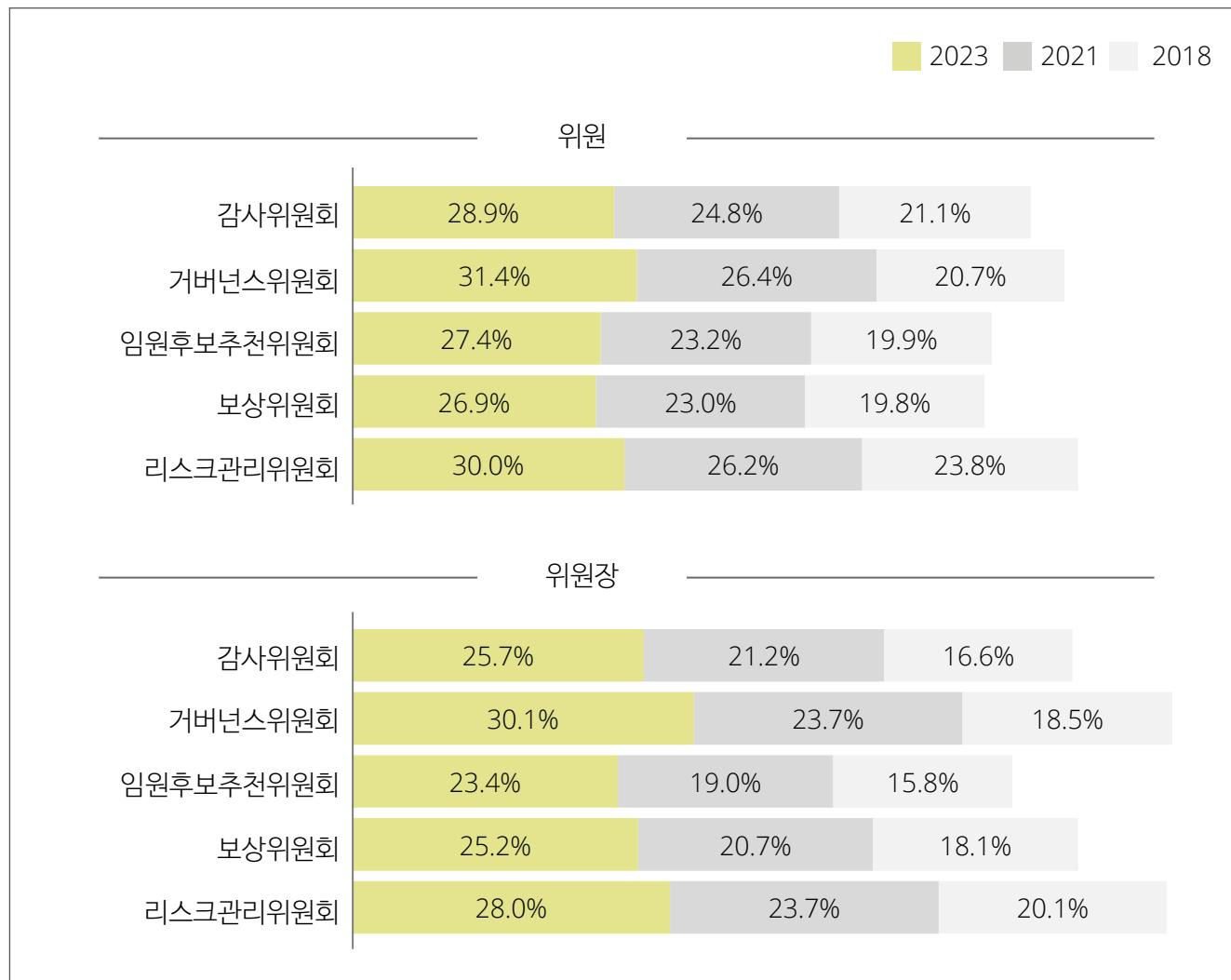
6)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th Edition」, 2024.03.
 7) 총 분석 기업 수는 18,085사이며, 이사회 내 여성이사 수는 18,532명임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7. 이사회 다양성

- 글로벌 이사회는 여성이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 의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글로벌 이사회 내 위원회 여성 비율⁸⁾



8)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th Edition」, 2024.03.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7. 이사회 다양성

-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이사회 내 여성 비율 지침(Women on Boards Directive)'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직원 수 250명 이상 상장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이사의 40%, 또는 상임이사의 33%를 여성으로 총족해야 함
 -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기업은 이사회 성비 정보를 매년 당국에 보고해야 함

<표 1>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상장사 이사회 내 여성 비율 지침 요지 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최소 33%는 과소 대표되는 성별이어야 함 •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명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선임 시 성별이 다른 2명이 동등하게 자격이 있는 경우, 성별 균형 목표를 이루지 못한 기업은 과소 대표된 성별 후보에게 우선권 부여 -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자격 기준 공개 - 사내이사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개별적 노력 - 성별 균형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유와 개선방안 보고 - 국내법에 본건 지침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위반시 벌금 부과, 이사 선임 무효·취소 등) 삽입

- 본 지침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203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적용되며, EU 회원국은 2024년 12월 28일까지 이를 자국의 법률로 시행해야 함
 - EU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수용할 경우, 한국에서도 관련 법령,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의 해외 벤치마크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9) The European Organisation of Military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EUROMIL), 「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related measures」, 2022.12.07.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이사회 평가

-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구성·운영·기능 수행 수준을 점검하여 이사회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버넌스 장치로, 국내에서는 이사회 평가와 관련한 규율 수준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비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 여부와 미평가 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¹⁾
 - 반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이사회의 운영 현황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²⁾
-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평가대상을 이사회 전체,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와 재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하에서는 관련 법·제도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평가에 대한 공시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표 1> 지배구조 모범규준 >> ② 이사회 리더십 >> 1.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1.11

- 이사회는 경영진·이사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보수 및 재선임 등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함
-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함
- 평가는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이사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외부자문을 활용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이사회 운영 개선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항, 동 시행세칙 제7조의2 제1항

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1) 금융회사 이사회 평가 공시 현황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39개사 모두 이사회 평가방법을 공시하였으며, 이 중 평가 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은 38개사(97.4%)로 전기 대비 각각 2.5%p, 14.9%p 상승함
 - 이사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모두 공시한 회사 비율은 대폭 상승(14.9%p)하여 고무적인 변화를 보임

<표 2>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³⁾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비중
기업 수	39	33	39	38	+ 2.5%p	+ 14.9%p
비율	97.5%	82.5%	100.0%	97.4%		

- 이사회 구성, 역할, 운영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절차)과 결과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권장되며, 평가주체는 이사 전원 또는 사외이사와 임직원으로 구분되며, 자기평가·이사 상호평가·직원 평가·설문방식·정성평가(서술형)·정량평가 등을 조합하여 활용 중임
 - 일부 금융사는 이사회 의장에 대한 별도 항목을 두거나 인터뷰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도 병행함
-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사회 평가결과가 '우수', '적정' 등 긍정적 표현으로만 제시되어, 실질적 개선사항 도출이나 피드백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임
- 다음의 공시 사례는 각각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평가방식을 고도화한 경우와, 내부 자가진단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한 경우임

3)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표 3>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 Case 1 (외부기관 활용)⁴⁾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매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반영하여 외부 평가를 도입하였는데, 2000년 00월에 개최된 제 0회 이사회에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00를 선정하였고, 동년 0월에 개최된 제 00회 이사회에서는 00에서 글로벌 기관의 평가 지표 등을 벤치마킹하여 변경한 평가 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00는 변경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2000년 0월에 2000년도 활동에 대한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 주체는 사외이사와 임직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평가주체별로 평가하는 세부 평가 항목은 기준 5 점 척도 점수 체계의 한계 극복 및 정성적 평가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 항목별 수행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단계형 척도'와 '평가 항목별로 충족하는 조건을 개수 기준으로 점수화하는 요건형 척도'를 혼합 적용함으로써 문항별 배점 구간을 0 점에서 최대 7 점 이내로 분포하도록 하는 등 평가 문항 및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는 서면 혹은 전자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문항별 평가 및 의견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주체	세부 평가 항목
이사회 평가	이사회	사외이사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역할과 책임 • 이사회 구조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지속가능성 • 이사회 평가
		이사회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역할과 책임 • 이사회 구조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평가

평가 결과는 설문지의 구성상 단계형과 요건형 척도 문항의 배점 구간이 0 점에서 최대 7 점 이내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바, 해당 문항별 점수를 100 분위 형태로 환산하여 평가 영역별로 평균점수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점수구간	평가결과
90점 이상 ~ 100점 이하	최고 수준
80점 이상 ~ 90점 미만	기대 수준 이상
70점 이상 ~ 80점 미만	기대 수준
60점 이상 ~ 70점 미만	보통
60점 미만	미흡

4) 2024년 A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사례 참고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표 3>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 Case 1 (외부기관 활용) (계속)

2000년 0월에 개최된 제 00회 이사회에 보고된 2000년도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점수구간	평가결과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최고 수준
이사회 구조	최고 수준
이사회 운영	최고 수준
이사회 지속가능성	최고 수준
이사회 평가	최고 수준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표 4>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 Case 2 (내부평가)⁵⁾

당사는 이사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초에 전년도 이사회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주체는 이사 전원이며 평가항목은 4개 부문,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이사회 구성 규모 적정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등 10 개 문항
- 이사회 기능과 적정성: 이사회의 자문 견제 및 감시기능 수행의 적정성 등 5 개 문항
- 이사회 책임: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등 3 개 문항
- 주주 권리 및 주주 관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이사회 의사결정 여부 등 2 개 문항

평가방법은 각 문항별 5등급(S등급~D등급)의 평가지표에 대해 이사 전원이 자가진단하는 '5등급 척도 무기명 설문평가' 와 '정성평가(서술형 등)' 방식이며 평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이사회 평가결과는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이사회 평가결과는 2025년도 제2차 이사회(2000.00.00.)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평가결과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이사회 구성 규모의 적정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선출 및 평가 시스템의 적절성', '안건 적시 제공 및 충분한 사전설명'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 절차를 통해 높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이사회 기능과 역할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 및 계획에 대한 충분한 토의', '경영성과 및 주요지표 등에 대한 주기적 감독'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영진의 중요한 업무집행상황을 충실히 감독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이사회 책임 부문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공정한 입장 견지', '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이사회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관계 부문은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재무보고 자료의 적정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해관계 및 입장 고려 여부'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핵심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습니다.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2)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공시 현황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결과를 공시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별 평가 실시 비율에는 편차가 있으나, 4개 위원회 중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평가방법 공시 및 평가방법·결과 공시 비율이 높은 추세이며, 보수위원회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89.7%(35사)이고 전기 대비 2.8%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7.2%(34사)로 전기 대비 12.2%p 대폭 상승함

<표 5>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⁶⁾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비중
기업 수	37	30	35	34		
비율	92.5%	75.0%	89.7%	87.2%	- 2.8 %p	+ 12.2%p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후보추천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94.9%(37사)로 전기 대비 2.6%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9.7%(35사)로 전기 대비 14.7%p 대폭 상승함

<표 6> 2023년-2024년 금융회사 후보추천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⁷⁾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비중
기업 수	39	30	37	35		
비율	97.5%	75.0%	94.9%	89.7%	- 2.6 %p	+ 14.7%p

6,7)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94.9%(37사)이고 전기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9.7%(35사)로 전기 대비 17.2%p 대폭 상승함

<표 7>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⁸⁾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비중
기업 수	38	29	37	35		
비율	95.0%	72.5%	94.9%	89.7%	- 0.1 %p	+ 17.2%p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보수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84.6%(33사)로 전기 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76.9%(30사)로 전기 대비 19.4%p 대폭 증가함

<표 8> 2023년-2024년 금융회사 보수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⁹⁾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공시 비중
기업 수	34	23	33	30		
비율	85.0%	57.5%	84.6%	76.9%	- 0.4 %p	+ 19.4%p

- 아래는 감사위원회 성과평가에 대한 실제 공시 사례로, 위원회 평가 목적, 기준, 방식,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성과평가 공시의 작성 예시로 참고할 수 있음

8,9)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표 9>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¹⁰⁾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 평가주체: 감사위원 전원
-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00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0항, 제0항
- 평가주기: 1년(매년 0월 평가)
- 평가기준: 구성(전문성) / 기능·역할 / 운영 /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 감사위원장의 역할
-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방식 : 객관식(5점 척도) + 주관식

※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반영한 평가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주관식 문항 도입

이사회는 매년 0월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전문성), 기능과 역할, 운영, 경영진간 의사소통 및 위원장의 역할 등이 포함되며, 동 평가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등 이사들의 역량 및 경험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감사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원 요청 시 추가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가 견제와 감시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고 등 주기적 점검을 통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감사위원장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위원회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는 개선세를 보였으나, 다수의 회사는 평가 결과를 '적정', '우수' 등으로 요약하고 있어, 정량·정성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 재선임 및 보수 책정과의 연계 여부, 피드백 절차 등에 대한 공시가 부족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실효성 및 환류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3)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평가(내부) 공시 현황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주요 개별 사외이사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다음의 사항으로 정리됨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개별 사외이사 내부평가 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87.2%(34사)이고 전기 대비 7.8%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2.1%(32사)로 전기 대비 10.4%p 하락함
 - 개별 사외이사의 내부평가 실시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은, 2023년에 내부평가를 실시했던 일부 금융회사(2사)가 2024년에는 외부평가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10>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내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¹¹⁾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38	37	34	32	- 7.8%p	- 10.4%p
비율	95.0%	92.5%	87.2%	82.1%		

4)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평가(외부) 공시 현황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주요 개별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4사(10.3%)로 아직 많지 않으나, 전년 대비 5.3%p 상승한 수치를 보이며 개선된 추세를 보임
-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 역시 10.3%(4사)로, 전기 대비 동일한 폭(5.3%p)으로 증가한 점은 외부평가 공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 변화로 해석될 수 있음

<표 11>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외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¹²⁾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2	2	4	4	+ 5.3%p	+ 5.3%p
비율	5.0%	5.0%	10.3%	10.3%		

11,12)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표 12>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내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¹³⁾

(1) 내부 및 동료평가

(가) 개요

- 평가주체: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사외이사 활동을 근접 관찰할 수 있는 내부 인력에 의한 내부 평가와 각 사외이사에 대한 동료 평가로 구분됩니다.
- 평가기준: 사외이사별로 연간 활동내역, 이사회/위원회 및 기타 회의 출석률(%)을 참고하여 4개 평가항목(충실성, 전문성, 리더십,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내부 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절차: 각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와 사외이사별 이사회/위원회 출석 자료에 근거하여 동료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평가, 동료평가 등 다면적으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당사는 2000년 말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내부평가 및 동료평가 결과 0인의 사외이사 전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핵심원칙을 반영하고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現 사외이사 평가체계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2000년 제00차 이사회(2000.00.00.):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

2000년부터는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사외이사 OOO]

- 충실성: 모든 이사회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고, 안건에 대해 꼼꼼히 사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생략) 특히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 또한 교육·세미나에 적극 참석하여 금융, 감사제도, 지배구조 관련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경영진과 공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
- 전문성: (생략) 금융업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시각을 쌓은 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 또한, 기업지배구조 및 ESG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OO회장으로 선임되어 각종 포럼, 교육,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여성 이사 확대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리더십: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힘썼으며,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화합과 조화를 이끄는 등 리더십을 발휘함. 또한 OO 출신 사외이사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경영진 견제 및 이사회 균형 유지에 기여하며 지배구조 안정화에 이바지함 (생략)
- 기여도: (생략) OO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금융 시각과 통찰력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제안함. 또한 감사위원회로서 내부통제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책무구조·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표 13>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외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¹⁴⁾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에 의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재선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00조 제0항)

특히,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핵심원칙을 반영하여 2000년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제2000-00차 이사회 결의) 사외이사 평가체계 주요 개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평가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혼합하였으며 출석률, 연수 참여율 등 정량지표를 확대(1개→5개)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문분야별 맞춤형 질문을 도입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 및 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진평가 비중을 폐지하고, 본인(20%) 및 동료(80%)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에 외부 자문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외부 자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설문지 구성, 평가 프로세스 설계 및 외부 자문기관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주기적인 평가체계 점검을 도입하였습니다. 매년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평가 내용 및 설문항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넷째, 평가 피드백 강화입니다. 인터뷰, 주관식 항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한 유의미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평가의 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 내부평가

(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이사회는 전년도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도 초(0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정성 지표(6개 항목)]

- 역량 및 전문성 (금융산업 이해도, 전문분야별 맞춤형 질문)
-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공정한 직무수행, 주주 및 고객이익 제고)
- 발전 기여도 (경영 조언, 새로운 관점 제시)
- 이사의 역할 (회사 통합 관리, 대표이사 후보 발굴)
- 의사소통 능력 (합리적 근거 제시, 의견 경청)
- 회사 이해도 (단기, 중장기 경영전략 이해)

[정량 지표(3개 항목)]

- 충실성 (이사회(내원회) 및 간담회 참석률)
- 참여도 (교육/연수 참석률 및 활동시간)
- 적극성 (이사회 중요발언 및 자료요청 횟수)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표 13>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외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계속)

- ③ 평가 절차 : 외부 평가기관이 주관하여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웹 기반의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본인 평가, 동료 평가를 진행합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주체 · 기준 · 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정한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해당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00년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평가, 동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00월 말 기준 재임 중인 7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역량 및 전문성, 기여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력 및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 내부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분한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2000년 0월 실시)

[사외이사 OOO]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금융, 재무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를 검토하고, 수익 창출 및 재무 안정성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특정 이해관계에 얹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생략)
발전 기여도	최우수	전문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음 (생략)
이사의 역할	최우수	자회사의 경영현황, 내부통제 등 회사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능한 대표이사 후보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의사소통 능력	최우수	당사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및 설득력 있는 의견 제시 등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여함 (생략)
회사 이해도	최우수	당사의 단기, 중장기 전략 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전략적 목표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충실성	최우수	이사회(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
참여도	최우수	교육 및 연수 참석률 100% 및 활동시간 000시간으로 우수한 참여도를 보임
적극성	최우수	이사회 및 내위원회 회의 시 경영전략, 재무·리스크관리 중심의 적극적인 발언을 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4) 글로벌 이사회 평가

- 2025년 기준, S&P 500 기업의 99%는 평가 대상과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일정한 형태의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평가 범위 측면에서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사회·위원회·개별 이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 평가체계도 확산되는 추세임
 - 이사회·위원회·개별 이사를 모두 평가하는 기업 비중은 47%로, 2015년(33%) 대비 크게 증가함
 - 이사회·위원회만을 평가하는 기업 비중은 47%로 나타났으며, 이사회만을 평가하는 기업 비중은 4%임
- 개별 이사 평가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평가 방식의 고도화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함
 - S&P 500 기업의 48%가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함
 -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27%로, 전년(26%) 대비 소폭 하락함

<그림 1> 2025년 S&P 500 기업의 이사회 평가 실시 현황¹⁵⁾



<표 14> S&P 500 기업의 이사회 평가 유형 현황¹⁶⁾

구분	2025년	2024년	2020년	2015년
이사회·위원회	47%	48%	49%	52%
이사회·위원회·개별 이사	47%	47%	42%	33%
이사회	4%	4%	7%	10%
이사회·개별 이사	1%	1%	2%	5%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 이사회 평가항목으로는 업무의 적절성, 업무 이행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 항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미국 이사회의 주요 평가 항목과 관련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5> 미국 이사회 평가 항목¹⁷⁾

구분	내용
위원회 구성 - 인원, 선임, 승계계획, 오리엔테이션	96%
위원회 - 구성, 감독분야/범위, 위원장 및 멤버 임명 절차	95%
회의 - 주기, 시간, 유형 (대면/비대면/혼합)	92%
회의자료 - 정보흐름, 보고, 회의 전 회람여부, 안건 설정	91%
전문성, 경험, 역량 다양성	88%
이사회 문화	86%
감독 책임	81%
이사회 운영	80%
이사회 리더십 - 의장 및 위원장	79%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68%

17)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oard Practices Quarterly - Board education and evaluations」, 202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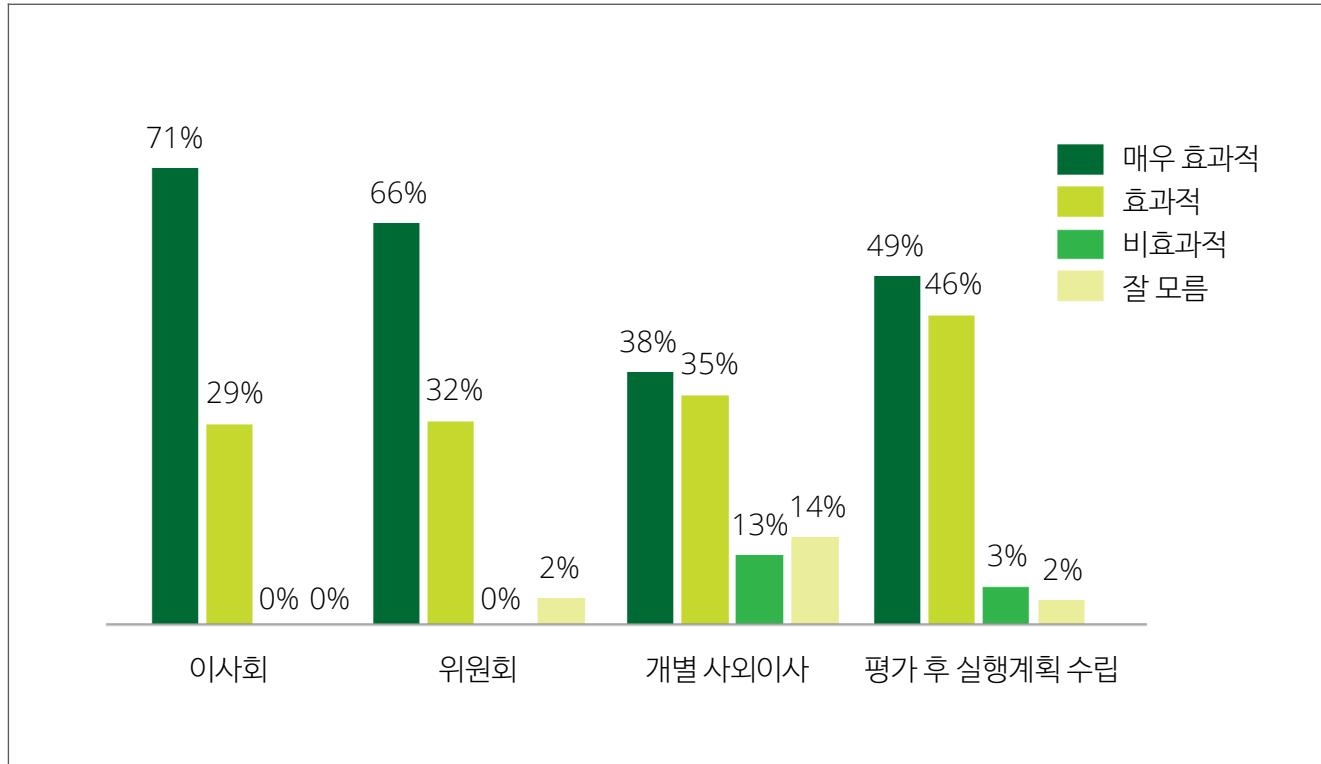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8. 이사회 평가

□ 평가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이사회 평가 후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강조됨

- 95%의 응답자는 평가 후 실행계획의 수립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평가주체에 의한 다양한 평가수단의 활용에 대해 이사회가 객관성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사료됨

<그림 2> 미국 이사회 평가활동 피드백 – 효과성 제고¹⁸⁾



18)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oard Practices Quarterly - Board education and evaluations」, 2022.09.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9. 사외이사 보수

1) 사외이사 보수

- 사외이사 보수란 회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며, 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등이 포함됨¹⁾
 -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상도 포함됨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강행규정으로, 절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²⁾
 -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액을 정한 후,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세부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적법하게 결정된 사외이사 보수는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³⁾
 -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 특정 이사에 대해 이를 박탈하거나 감액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음
-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보수가 과도하게 낮을 경우 직무 수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경우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적정 수준에서 균형 있는 보수체계가 요구됨

1)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3)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9. 사외이사 보수

2) 국내 사외이사 보수 현황

- 2024 회계연도 기준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4,907만원으로, 2023 회계연도 4,867만원 대비 소폭 증가함
 - 2024 회계연도 기준 국내 KOSPI200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7,109만원으로,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평균의 약 1.5배 수준이며 2023 회계연도 7,063만원 대비 소폭 증가함
 - 2024 회계연도 기준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감사위원 평균보수는 5,395만원으로, 2023 회계연도 5,382만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2024 회계연도 기준 국내 KOSPI200 기업의 감사위원 평균보수는 7,446만원으로,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평균 대비 약 1.4배 수준이며 2023 회계연도 7,574만원 대비 소폭 감소함
 -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KOSPI200 기업 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 수준 격차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부여되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표 1> 2022~2024년 회계연도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평균보수 현황 ⁴⁾

구분	FY2022			FY2023			FY2024			
	평균보수		평균보수		평균보수		평균보수		평균보수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4,799 만원		4,867 만원		4,907 만원				
	감사위원	5,278 만원		5,382 만원		5,395 만원				
KOSPI200 상장법인	사외이사	6,884 만원		7,063 만원		7,109 만원				
	감사위원	7,238 만원		7,574 만원		7,446 만원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총 837개사의 FY2022-FY2024 사업보고서상 '임원의 보수' 항목을 참고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9. 사외이사 보수

3) 글로벌 사외이사 보수 현황

□ 글로벌 50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보수 수준은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4 회계연도 기준 사외이사의 연간보수는 기본급 2억 1천만원 수준(146,605 USD)이며, 이 외에도 위원회 활동에 따른 근무수당, 위원장 직무에 대한 개별 수당, 주식 보상(스톡옵션 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등)이 있음
- 글로벌 사외이사의 보수 수준은 국내와의 경제 규모 및 기업 환경 차이에 따라 일정 부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내에 비해 위원회 겸임 수가 많고, 회의자료 검토, 비공식 회의 참여, 외부감사인 및 유관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직무 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역할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그림 1> 2024 회계연도 S&P 500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 현황⁵⁾

		FY2022	FY2023	FY2024	전기 대비 (FY23-FY24)
기본급	사외이사	\$ 143,106	\$ 144,077	\$ 146,605	1.75%▲
추가 기본급	위원	감사위원회	\$ 14,424	\$ 14,618	\$ 14,941
	위원	보상위원회	\$ 12,027	\$ 12,121	\$ 12,382
	위원	임원후보추천· 거버넌스위원회	\$ 10,185	\$ 10,263	\$ 10,551
	위원장	감사위원회	\$ 29,636	\$ 30,648	\$ 31,404
	위원장	보상위원회	\$ 23,611	\$ 24,454	\$ 25,329
	위원장	임원후보추천· 거버넌스위원회	\$ 20,057	\$ 20,956	\$ 21,918
					4.59%▲

5) Spencer Stuart, 「2025 S&P 500 Compensation Snapshot」, 2025.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9. 사외이사 보수

- 글로벌 500대 기업 사외이사는 보수 지급 방식 측면에서도 국내와 차이를 보이며, 회사가 제시한 평가항목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내 대다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한 공시가 제한적이고 현금 지급이 주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한 사례도 일부 존재하며, 해당 제도가 사외이사의 중장기적 책임성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경우,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장기 성과 연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2> 2024 회계연도 S&P 500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 수령 유형별 비중⁶⁾



-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KOSPI200 상장법인 간 사외이사 보수 수준의 차이가 존재함
 - 자산 및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저명인사를 사외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글로벌 500대 기업 간 사외이사 보수 수준에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가별 근무 환경과 제도, 직무 수행에 투입되는 시간,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도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이상적으로 국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보수는 성과를 촉진하는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주환원 수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 보수 수준이 상승하는 만큼,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됨

6) Spencer Stuart, 「2025 S&P 500 Compensation Snapshot」, 2025.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AI 거버넌스

- AI 기술의 급속한 도입·활용 확산에 따라, AI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기술적·윤리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보안·프라이버시·법적 리스크를 포함한 AI 관련 리스크 관리는 AI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데이터·알고리즘 편향성, 보안 취약성, 개인정보침해 등은 AI 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내 기업은 AI 활용 시 보안취약성(85%),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85%), 규제부담(83%)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며, AI 사용 증가(46%), 규제 준수 강화(42%) 등을 거버넌스 강화 효과로 기대하고 있음
 - 기술 구현(35%), 전략·비전 부재(33%), 규제·윤리리스크(31%)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1> AI 신뢰 구축 관련 국내 현황¹⁾



1)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의 900명 이상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 응답자는 52명임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 AI 거버넌스는 AI의 연구·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기준 및 조직의 가치를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체계임
- 이사회는 AI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작동하는지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AI 거버넌스 감독 역량과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 AI 거버넌스 정의²⁾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도구·시스템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유지되도록 AI의 연구·개발·활용을 안내하는 프레임워크, 규칙 및 표준 • AI 시스템의 개발·배포·유지관리 전반을 감독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 포괄 • 법적·윤리적 경계 내에서 AI가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보호장치

1)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 거버넌스 성숙도 지수

- 딜로이트 글로벌은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해 '프레임워크(Deloitte Trustworthy AI Framework)'와 'AI 거버넌스 성숙도 지수'를 제시함
 - 성숙도 지수는 5가지 기준에서 조직의 AI 거버넌스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성숙도 측면에서 '기초-발전-준비완료' 단계로 분류됨

<그림 2> 딜로이트의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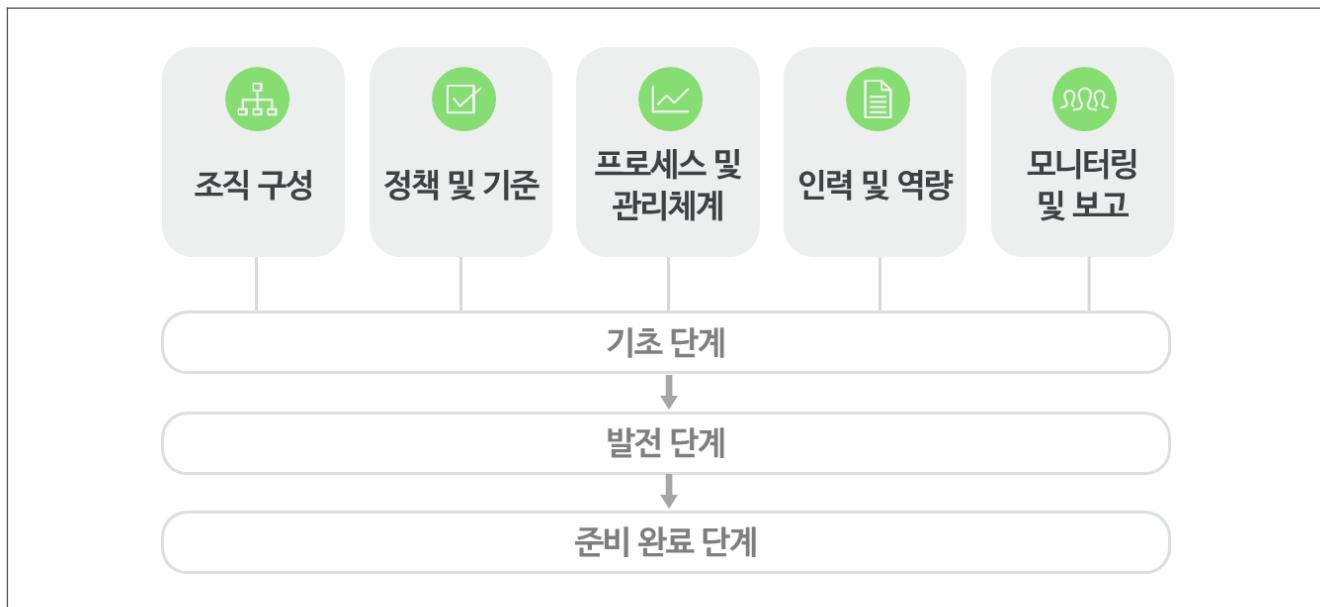
2) 딜로이트 인사이트, 「생성형AI의 사회경제적 위험과 윤리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 2024.11.06.

3)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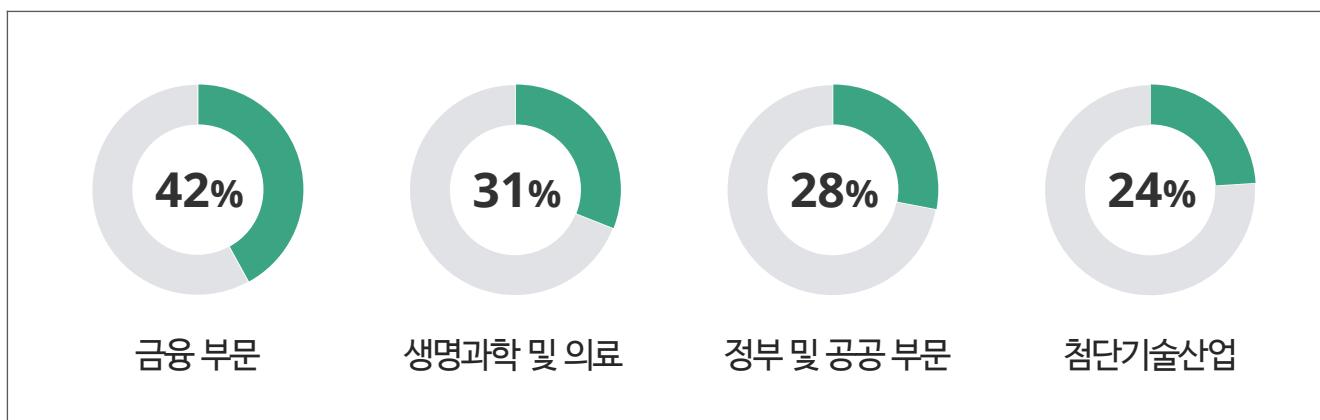
<그림 3> 딜로이트의 AI 거버넌스 성숙도 지수의 5가지 기준⁴⁾



2)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온 AI

-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AP) 지역 서베이 결과, AI 거버넌스 도입은 업무 효율성 제고, 재무 성과 개선 및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적용 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⁵⁾ 주요 산업 전반에서 4분의 1 이상의 기업이 AI 관련 사고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90% 이상의 조직은 여전히 AI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책·기준(31%) 및 프로세스·관리체계(23%)는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남

<그림 4> 전기 회계연도 대비 산업별 AI 사고 증가 현황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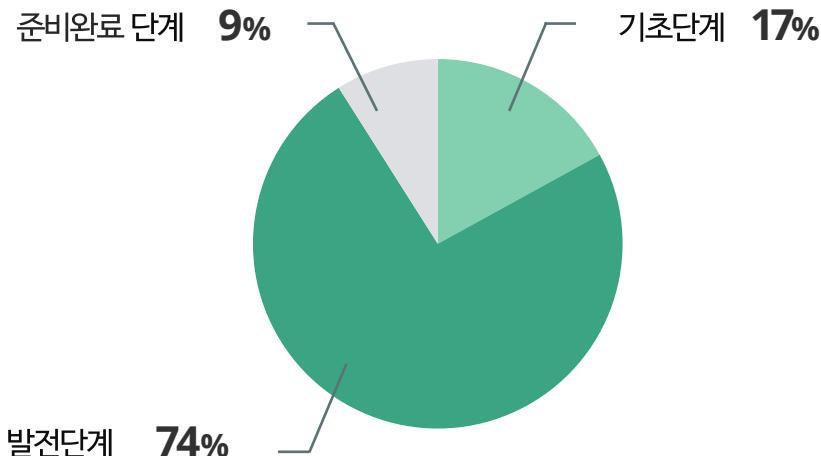


4,5,6)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약 900명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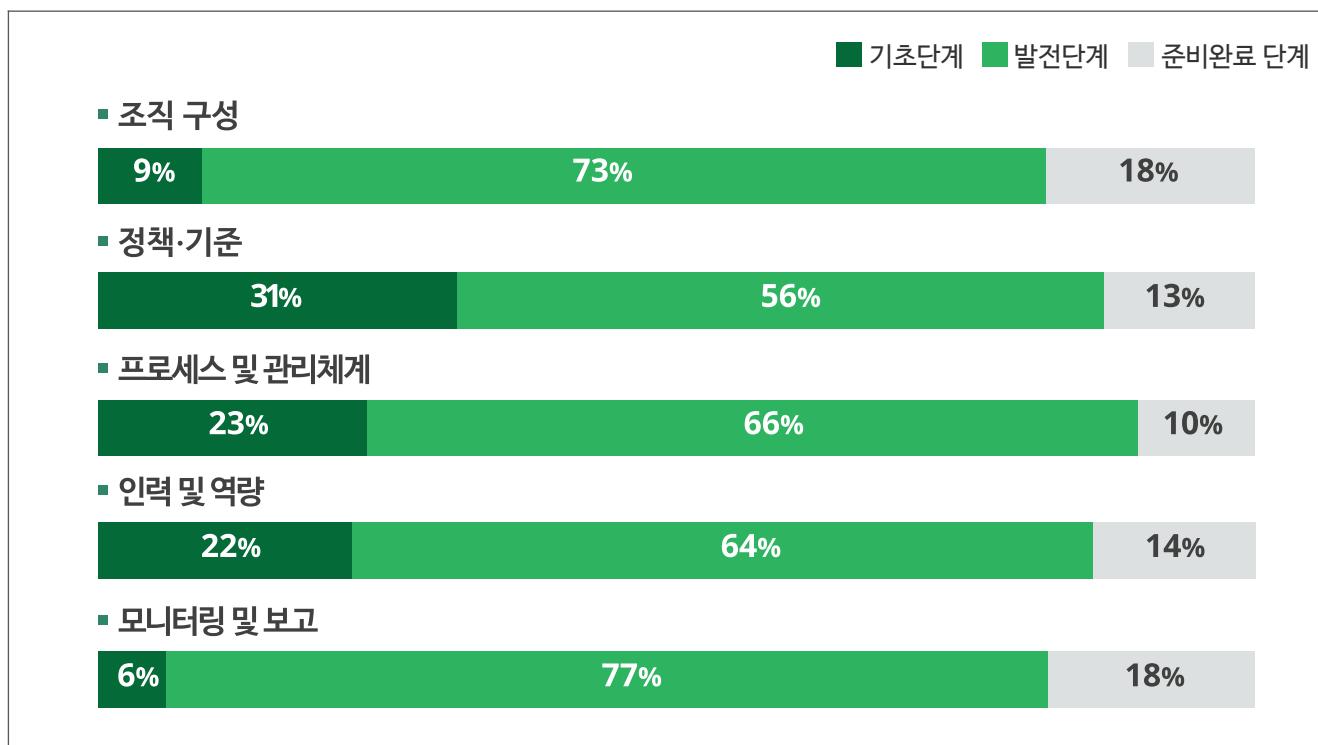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그림 5> AI 거버넌스 성숙도 현황⁷⁾



<그림 6> AI 거버넌스 성숙도 현황 – 세부 기준⁸⁾



7,8)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약 900명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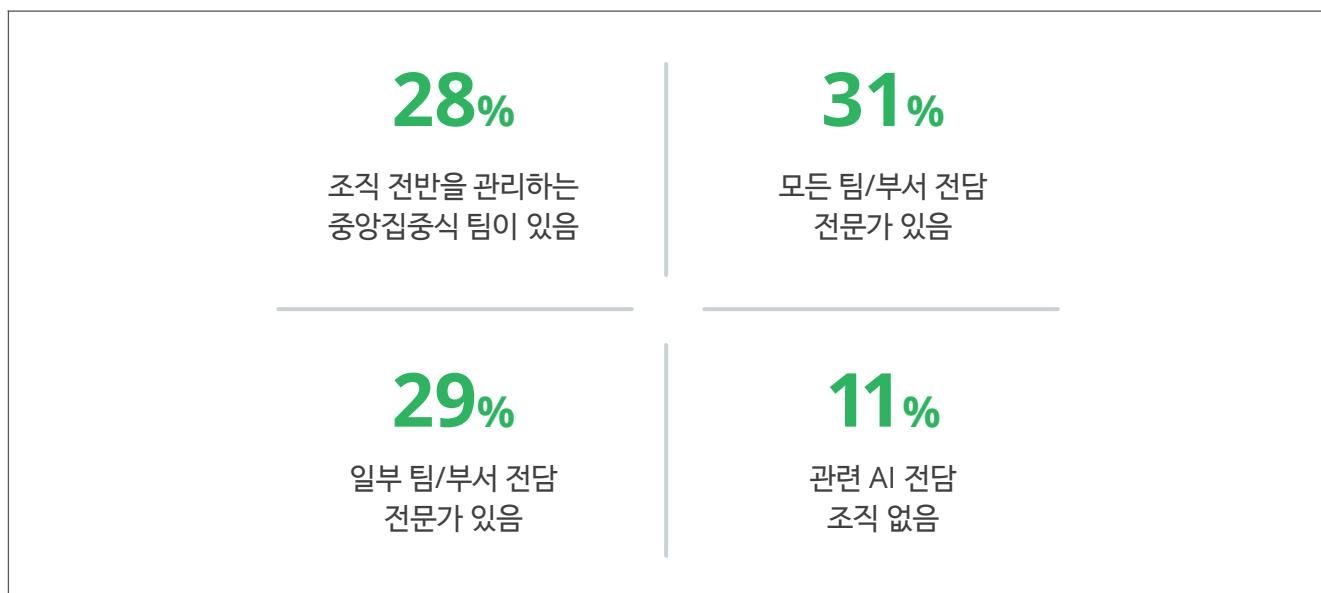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3) AI 거버넌스 성숙도 기준 1: 조직 구성

- AI 거버넌스 성숙의 출발점은 '명확한 역할 및 책임'의 부여이며, 조직 내 AI 관련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이 명확히 정의된 AI 관리 주체 설정이 필요함
- 아시아태평양(AP) 지역 응답자의 60%는 조직 내 AI 관련 윤리·법규 준수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했고, 11%는 담당 부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AI 관련 윤리·법규 준수 담당 부서 구조⁹⁾



9)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약 900명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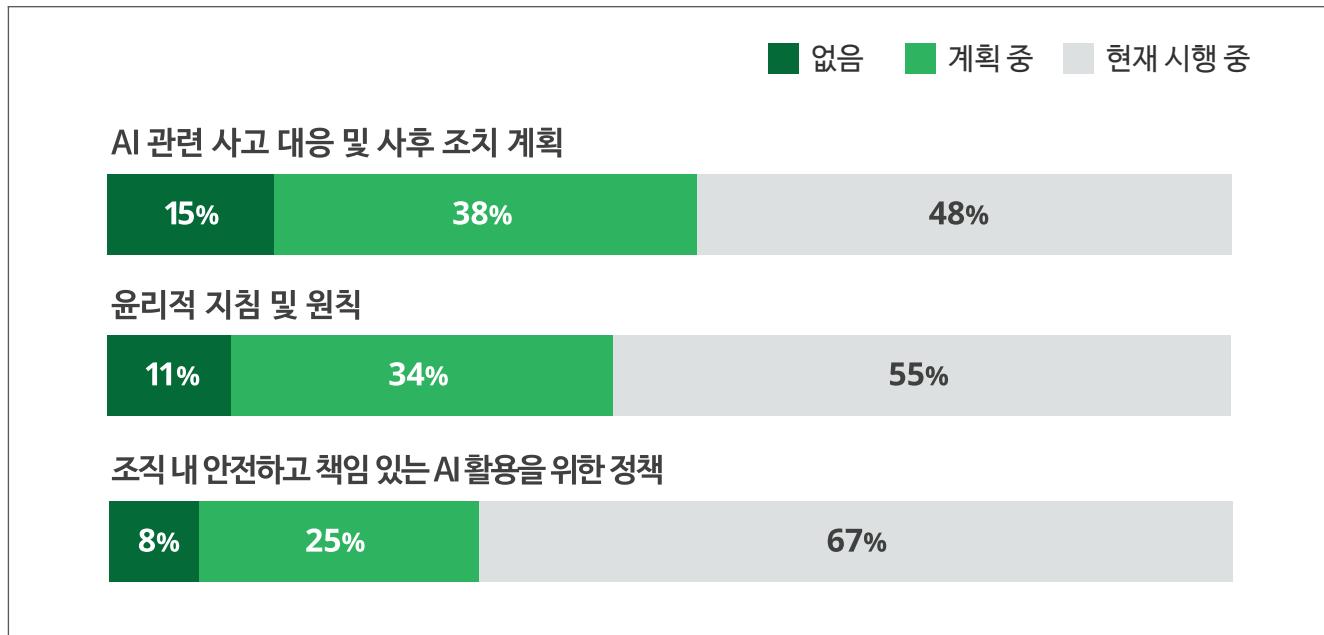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4) AI 거버넌스 성숙도 기준 2: 정책 및 기준

- AI 정책에 AI 거버넌스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AI 중요성 및 이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
- AP 지역 대부분의 기업은 AI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AI 정책 내 AI 거버넌스 항목 포함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AI 정책 보유 기업 중 사고대응 계획을 시행 중인 곳은 48%, 윤리지침은 55%, 안전한 활용 정책은 67%에 불과함

<그림 8>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현황 (거버넌스 요소 포함 현황)¹⁰⁾



10)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약 900명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5) AI 거버넌스 성숙도 기준 3: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 AP 지역의 기업에서는 AI 사고가 전기 대비 27% 증가해,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해진 상황으로 나타남

<그림 9> FY23 대비 FY24의 AI 사고 건수 변화¹¹⁾



- 응답자의 40%는 AI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하는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가 미비했다고 응답함
 - 리스크 관리체계를 보유한 조직은 미보유 조직 대비 질의건수가 5배, 사고보고가 2배 많았음
 - 이는 리스크 인식과 대응이 활성화된 기업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AI 운영이 가능함을 시사함
 - 반면 시스템 미보유 조직은 AI 관련 신규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0>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현황 (12)



11,12)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약 900명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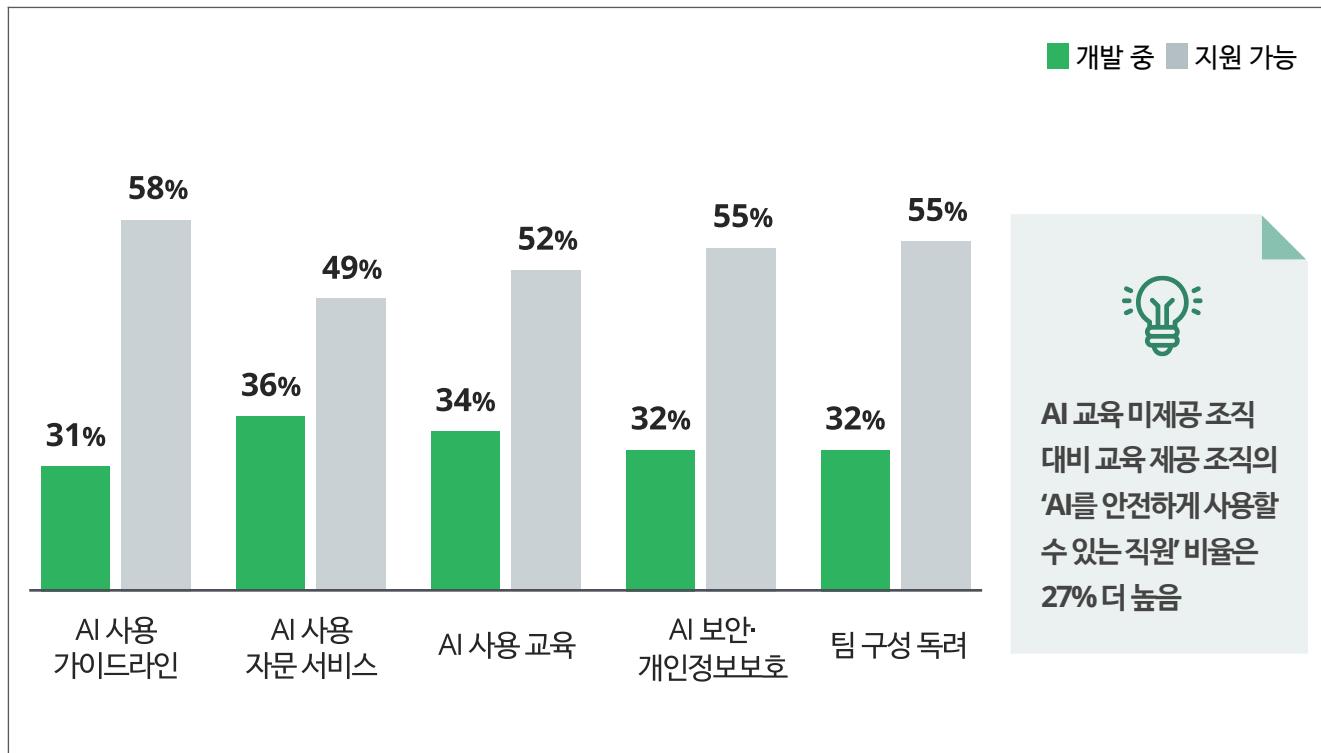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6) AI 거버넌스 성숙도 기준 4: 인력 및 역량

- AP 지역의 기업에서는 약 3분의 1의 조직이 AI 사용 지원체계를 개발 중에 있음
 - AI 교육을 제공한 조직은 미제공 조직보다 '안전한 활용 역량 보유 직원' 비율이 27% 높음
- 이는 인력 역량 강화가 AI 거버넌스 성숙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특히 기술·역량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

<그림 11> 조직의 AI 사용 지원 형태¹³⁾



13)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약 900명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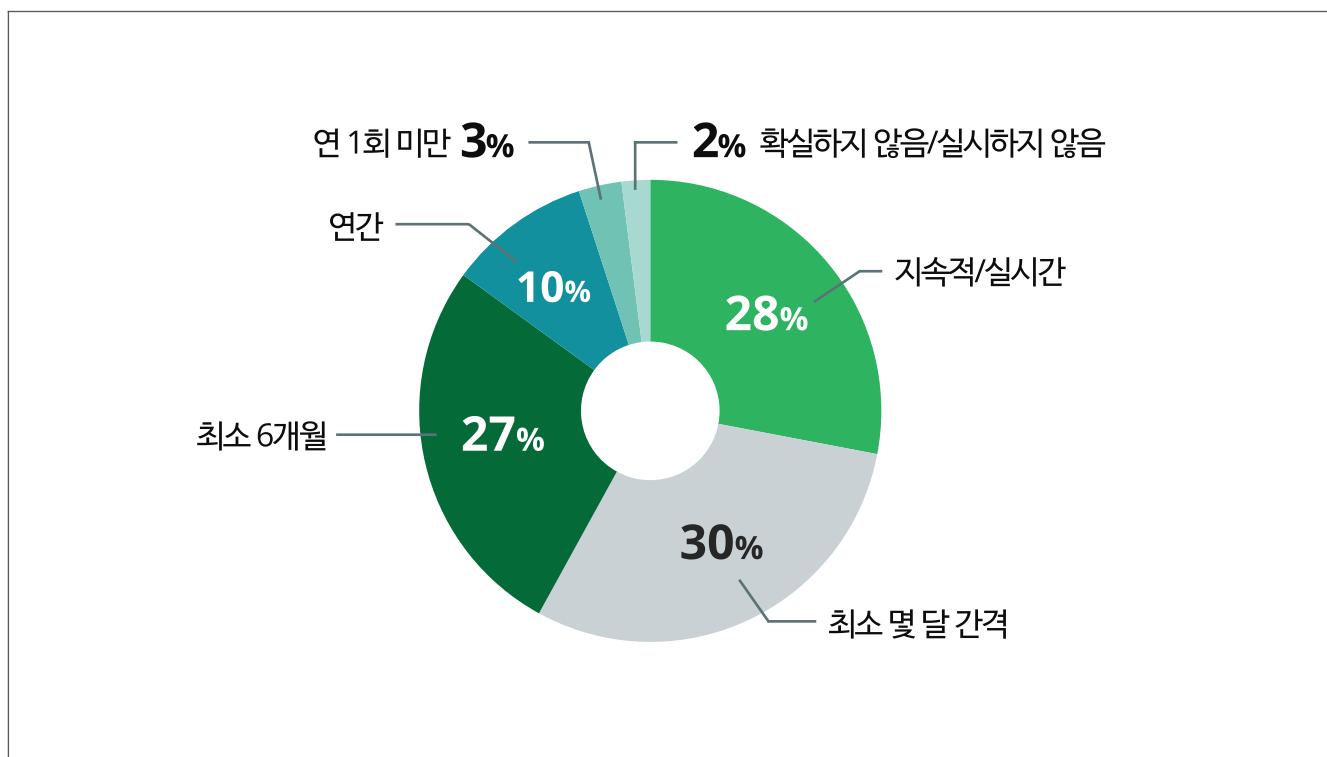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0. AI 거버넌스 감독

6) AI 거버넌스 성숙도 기준 5: 모니터링 및 보고

- AI 거버넌스의 완성은 지속적 점검과 개선에 있으며, 모니터링·보고 체계는 AI 리스크 대응력과 규제준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 AP 지역의 기업에서는 85%가 내부기준에 따라 최소 6개월마다 AI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있음
- 응답 기업의 18%는 '모니터링 및 보고' 기준에서 준비 완료 단계에 도달함
 - 75%는 법적·규제 요구사항을 정기 점검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¹⁴⁾

<그림 12> 내부 기준에 따른 AI 시스템 평가 빈도¹⁵⁾



14,15) Deloitte Access Economics & Deloitte AP AI 연구소, 「AI at a crossroads Building trust as the path to scale」, 2025.01,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지역, 약 900명의 고위 리더 대상 AI 거버넌스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I. 상장법인 KOSPI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

11. 결언

결언

- 이상과 같이 국내외 이사회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이와 유관한 KOSPI200 기업의 이사회 현황 항목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사항을 검토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검토항목: 이사회 구성, 이사회 안건, 이사회 운영,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 평가, 사외이사 보수 및 AI 거버넌스 등
 - 국내의 경우 주로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국내외 주요기관의 자료도 참고함
 - 국내 이사회의 현주소를 먼저 인지하고 추후 발전수준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음
- 이사회는 경영진, 외부감사인 및 지원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지속가능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그림 1> 이사회의 역할 예시 이미지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요약

- 최근 연이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이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자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음
-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였고,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 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¹⁾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엄벌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착근되지 못한 실정이며, 낮은 적발 확률과 적발되어도 남는 불법이익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자 함
 -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비해 취약한 초동 대응능력 및 인력·조직의 획기적 개선 추진으로 적발 확률을 높이고, 고의적·반복적 불공정행위는 불법이익을 넘어서는 금전 제재와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자 함

<표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주요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1)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를 신속적발, 엄정제재하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025.7.9.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1)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각기 다른 권한과 조사 시스템을 갖고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사건 발생 시 단계별·기관별로 조사가 이뤄져 연속성과 즉시성이 떨어지고, 긴급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음
- 위 실천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사건에 대한 지급정지, 압수수색 등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있음
- 합동대응단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중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중점 심리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중대 사건으로는 전력자의 재범, 대주주·경영진 등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SNS·허위보도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등이 있음
 -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진행중인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함²⁾
 - 혐의점 발견 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 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가 차단되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2)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여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4항을 개정하여 거래소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음³⁾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시장감시체계를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고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24년 기준 계좌 수 2,317만개 - 주식소유자 수 1,423만명 = 894만개 감시대상 감소(39%↓)

2)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은 현재 진행중인 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적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였습니다.」, 2025.09.23.

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2025.10.22.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3)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 엄단

-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으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적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⁴⁾

<표 2> 주요국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제재 수단 현황

구분	내용
자산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홍콩, 캐나다는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시 자산동결 조치(Freeze) 가능
임원선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홍콩, 캐나다, 호주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자본시장 거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 이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25.10.22.)하여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함
-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됨
 -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24.1.19.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음⁵⁾
 - 불법공매도행위는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임
 - 법정최고액 =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기준금액) X 100%(부과비율)

4) 금융위원회, 「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2025.04.14.

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함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 최대 약 66% 가중 가능
- 자본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 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함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함⁶⁾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함⁷⁾
-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에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내부감사, 외부감사 등 다중적 회계감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사·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음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2025.8.27.

7)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5.11.27.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표 3>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주요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 처벌하여 장기간 분식 유인 차단 서류 위변조, 감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는 분식회계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여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 적용 분식을 지시·주도한 실질사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회피 소지 차단 내부감사기구가 부정 적발하여 자진시정 시 제재감면 확대

1) 장기 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중처벌

-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커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금융위원회는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됨
 -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남
- 분식회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입는 피해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회계정보 조작·서류 위조·감사방해 등의 위반행위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사, 감사인의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를 무력화하는 회계정보의 직접적 조작, 기초서류(증빙서류 등)의 위변조,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해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어 실제 조치수준이 낮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함
 - 최근 5년간 외부감사 방해: ('19년~'23년) 연평균 2.6건 → ('24년 이후) 6건
 - 최근 5년간 회계감리 방해: ('19년~'23년) 연평균 0건 → ('24년 이후) 4건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 3대 범죄행위(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 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예정임

3) 실질적 지시자까지 책임 범위 확대

-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되어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서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하여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임
 -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20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억원)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의 최저 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설정함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 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을 도입·적용 중임⁸⁾

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3호바목(3)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4) 내부감사기구 역할 강화 유도

-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표 4> 해외 사례: 경영진 교체 후 노력에 따른 제재감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Cloopen 회사는 '21년 중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과대계상 분식혐의를 '22.4월 결산 중 외부감사인이 발견 후 이사회 보고에 보고함 • 이사회는 즉시 경영진 교체, 가담자 해고 및 내부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22.5월 SEC에 자진신고 및 조사 적극 협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를 완료함 • '24.2월 SEC는 민사 과징금 및 벌금 면제 조치를 발표함

-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독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 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면제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함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되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채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됨
-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요약

- 2025. 7. 22. 1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 2025. 8. 25.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5. 9. 9.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 9. 10. 시행될 예정임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에 이어 2025.11.24.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됨
- 개정 상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¹⁾

개정 상법 개요

-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함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현장과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후 8월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상법 제542조의7 제3항)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됨
 - 자산 2조원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 11월 24일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됨
 - 신규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며,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예외적 보유는 주주총회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식임

1) 법무부, 「일반주주 의사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 2025.09.02.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1차 개정 상법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2025.7.22. 공포 즉시 시행)

-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의 자금이 기업과 같은 생산적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
 -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였음
-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

<그림 1> 현행·개정법 비교

현행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p>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신설></p>	<p>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p>

- 현행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며 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 수행 시,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표 1>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²⁾

구분	내용
주주가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 이익 보호
기업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투명성 제고, 투자자 신뢰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를 통한 기업 저평가 문제 개선

<표 2> 시사점

구분	내용
총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안건 심의 시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 • 특정 주주 차별, 분할·합병 등 민감 이슈에 대한 민사·형사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의사결정 과정 및 판단 근거에 대한 체계적 문서화 • 필요시 법률 회계 등 외부전문가 의견 확보를 통해 책임 리스크에 대응 •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한 소수주주와의 선제적·투명한 의사소통 절차 마련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2027.1.1.부터 시행)

-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G20/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에서도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권고함
-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하였음

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국내외 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 방향 - 장정애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05.09.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그림 2> 현행·개정법 비교

<p>현행 제364조(소집지)</p> <p>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신설></p>	<p>개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p> <p>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p>
<p>현행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p> <p>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의결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p> <p>① _____ _____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_____ .</p>
<p>신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p> <p>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신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p>

-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법 제368조의4)만 존재하나, 개정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함
-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임

<표 3>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³⁾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장소로 인한 제약 해소 • 주주의 직접 참여 용이성 증대 • 주주 참여 확대로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

3)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 2025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2025년 개정 상법과 이사회의 대응방향,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09.11.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표 4> 시사점

구분	내용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운영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인프라, 사이버보안, 원격 인증 등 운영 기반 점검 및 기술 장애 대응체계 마련 전자주주총회 운영 프로세스(질의 투표관리, 데이터 보존 등) 정비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증가가 실질 지배력 연결 여부에 미치는 영향 검토 소수주주·해외소재 주주 참여 증가로 지배구조 개편 거래(분할·합병 등) 시 승인가능성 점검

3)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2026.7.23.부터 시행)

-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임

<그림 3> 현행·개정법 비교

현행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개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p>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p>	<p>① _____ 3분의 _____ 독립이사 (제382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_____ . _____ 독립이사는 _____ (후략)</p> <p>*제 400조의 제2항, 제542조의4조 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내지 제5항, 제542조의 11, 제635조 각 개정은 기재 생략</p>

-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의무' 도입 이후,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정의하였으며, 개정법은 독립이사를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독립이사 선임의무로 변경함
- 개정법은 독립이사 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함
 - 일반 상장사의 선임비율을 1/3로 개정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과반수(현행) 유지함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표 5>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내용
독립성 기반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견제와 감시
의사결정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균형 잡힌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거버넌스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신력 있는 IMD* 및 ACGA** 등에 거버넌스 순위 개선 요인 제공 <p>* 국제경영개발원,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p>

<표 6> 시사점

구분	내용
독립이사 확대에 따른 이사회 구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및 균형 구조 점검 후보군 관리, 자격검증, 평가 연임 연계 등 전략적 투명한 선임 및 추천 체계 구축 BSM* 조기도입을 통한 이사회 구성 적정성의 선제적 점검 및 승계계획 연계 강화 <p>* Board Skills Matrix: 이사회의 구성, 역량, 다양성 정보를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평가 프레임워크</p>

4)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를 강화 (2026.07.23.부터 시행)

-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여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하여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그림 4> 현행·개정법 비교

현행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p>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p>	<p>④ _____</p> <p>_____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_____).</p> <p>⑦ <후단 삭제></p>

- 현행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룰을 적용함

<표 7>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내용

- 소수주주 권리 개선 기회 마련
-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 증대
-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 가능성 증대

<표 8> 시사점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무 리스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정족수 미달 및 감사위원 선임 차질 가능성 증대 •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재무 전문성 및 독립성 검토 강화 • 감사위원회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부서 자원·운영체계 정기 점검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2차 개정 상법

1)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2026.9.10.부터 시행)

- '상법'은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그림 5> 현행·개정법 비교

현행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개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p>③ 제2항의 <u>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u></p>	<p>③ 제2항의 <u>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 없다.</u> <u><단서 삭제></u></p>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여 일반주주 측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함
-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됨

<표 9>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⁴⁾

구분	내용
주주가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 이익 보호
기업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투명성 제고, 투자자 신뢰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를 통한 기업 저평가 문제 개선

4)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 2025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2025년개정상법과이사회의대응방향: 임정하고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09.11.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표 10> 시사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소수주주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증가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협업 구조 점검 필요 주주제안·청구 절차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 및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의결권 분산으로 인한 이사회 다양성 강화 및 경영 불안정성 리스크 점검 필요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026.9.10.부터 시행)

-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그림 6> 현행·개정법 비교

현행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p>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_____</p> <p>_____ 2명 _____ 3명</p> <p>_____</p> <p>_____.</p>

-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예기간(법 공포 후 1년)을 부칙에 규정함

<표 11>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내용
소수주주 영향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주주가 감사위원 선출에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가능
기업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기능 강화로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표 12> 시사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며 이사회·감사위원회 의사결정 다양성이 제고될 전망 •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이 기업 투명성 제고의 핵심요인으로 부각 • 감사위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운영 규정·절차의 정비 필요성 증대 • 소수주주 참여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등 신규 리스크 요인 점검

3차 상법 개정안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자기 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표 13> 주요 내용⁵⁾

구분	내용
자기주식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배당권 등의 주주권 행사 불가 (안 제341조의3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식은 교환·상환 대상 사채 발행 및 질권 설정 불가 (안 제341조의3제2·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분할신주 배정 금지 (안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자기주식 소각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시 1년 내 소각 원칙 (안 제341조의4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요건(스톡옵션·우리사주 등) 해당 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 후 주총 승인 시 보유·처분 가능 (안 제341조의4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및 매년 주총에서 갱신 승인 필요 (안 제341조의4제3항)

5) 의안정보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표 13> 주요 내용 (계속)

구분	내용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처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에게 균등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제3자 처분 가능 (안 제342조제1항~제3항)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안 제342조제4항)
상장사 신탁취득 규제 및 처벌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사의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도 동등 수준 규제 적용 (안 제542조의16) 소각의무 위반 시 이사에게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안 제635조제3항제9·10호)

- 개정법은 자기주식 취득 시 1년 내 소각 원칙으로, 기보유분은 6개월~1년의 유예기간 후 동일 의무가 적용됨
 -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표 14>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내용
지배구조 건전성과 시장 신뢰 강화
주주환원 효과 확대
주주 간 형평성 확보

<표 15> 시사점

내용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이 '권리 없는 자본'으로 명확해지며 자사주 활용 범위 제한
자기주식 보유 시 사전계획·관리 필요성 강화
예외적 보유·처분 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주총 승인 및 매년 갱신 의무로 절차적 부담 및 이사 책임 강화
신주발행 절차 준용, 균등처분 원칙 적용으로 우호지분 확보·경영권 방어 수단의 활용 여지 축소
기존 신탁 기반 자사주 운용관행 재점검 필요
자본정책·인센티브·M&A 등 전사적 전략 재정비 및 주주와의 선제적 소통 필요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개정 상법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

- 대형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도입으로 해외소재 주주 및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한 명의 주주가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에 동시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주주총회 참여지분 중 대주주의 의결권 비율은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감소
 - 대주주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 중, 대주주의 지분율이 30% 초반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피투자주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 변동
 - 종속기업주식이 관계기업주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주식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 16> 사외이사 고려사항 –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심의 시, 총주주의 이익 및 주주 간 형평성 고려 여부가 사전 검토되었는가? • 주요 자본거래(물적분할, 합병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았는가? • 판단 근거 및 결정 경위가 회의록 등으로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었는가? • 이사의 경영판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사전검토·기록 등)와, 사후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보호장치(임원배상책임보험 등)가 마련되었는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주총 도입에 따른 주주 참여 구조 변화가 연결범위 판단이나 조직재편에 미치는 영향이 점검되었는가? • 전자주총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원격 주주의 인증, 공시, 의결 결과 보존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및 복구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3차 상법 개정안 포함)

<표 16> 사외이사 고려사항 - 체크리스트 (계속)

구분	내용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임기준, 자격검증 절차, 후보군 확보 전략 등이 정비되었는가? 이사회 구성 및 협업 방식이 독립이사 중심으로 재검토되었는가? 신규 독립이사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독립이사 성과평가 결과가 보수·연임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정족수 미달 리스크에 대비해 의결권 확보 전략(전자투표 등)이 수립되었는가?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재무 전문성과 독립성을 검증할 체계가 갖추어졌는가? 감사위원회가 실질적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정보접근 권한 등이 확보되었는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구성 다양성과 경영진 견제 가능성에 대한 영향이 검토되었는가? 소수주주 지지 후보자의 이사회 진입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협업구조가 점검되었는가? 1% 이상 주주 청구 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주제안 및 청구 절차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와 대응 전략이 마련되었는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의 독립성과 회계·재무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확보되었는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에 대한 최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을 반영한 선임 전략이 마련되었는가? 감사위원회 역할·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 활동을 위한 규정·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었는가? 소수주주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리스크(의사결정 지연 등) 대응방안이 수립되었는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 또는 보유·처분계획이 검토되었는가? 보유·처분계획이 법정 기재사항을 충족하며 주총 승인·갱신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신주인수권·주주평등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임직원 보상·M&A 등 예외적 활용 목적이 정관·내부규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신탁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를 반영해 신탁계약·운용 프로세스가 점검되었는가? 자기주식 관련 의사결정이 문서화되고, 이사 책임 리스크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이 확보되었는가?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요약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회사는 해당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함
- 회사는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외부감사제도 개요

-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표 1>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일정규모 이상	<u>2가지 이상</u>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u>3가지 이상</u> 해당 ①~④ 촉동 ⑤ 사원수 5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표 2>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현황¹⁾

(단위: 사)

구분	'22년	'23년	'24년	'25.9월
외부감사 대상 회사	37,519	41,212	42,118	42,763
지정회사 수 (선임기한·절차위반)	189	122	319	290

□ 올해 9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 2763곳으로 집계됐으며, 선임기한,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회사는 290곳임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해야 함

<표 3>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구분	선임기한 ²⁾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 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3개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²⁾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³⁾)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③ 기타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²⁾
④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2), 4)}

1) 금융감독원,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2025.11.27.

2)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3)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4)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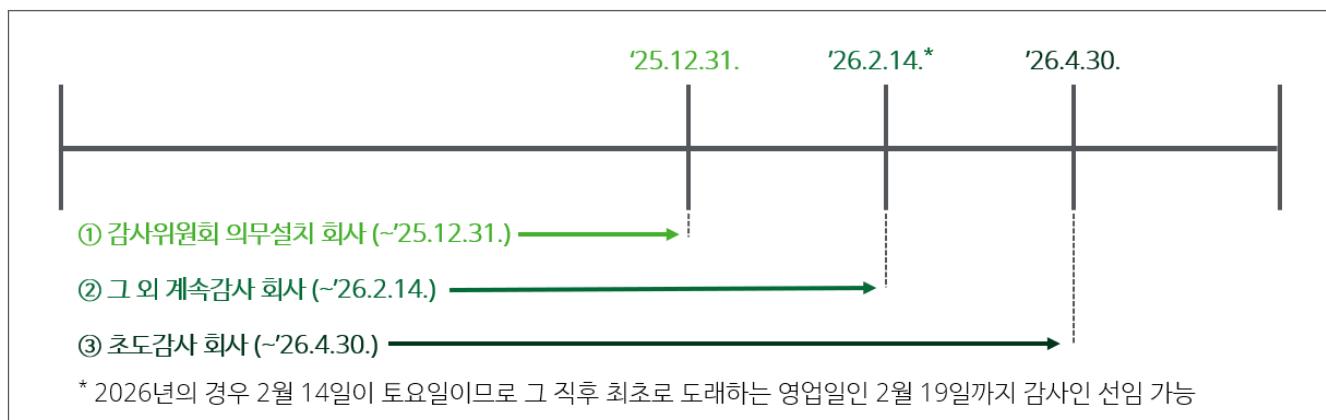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1) 선임기한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⁵⁾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그림 1> 12월 결산 회사의 2026년 감사인 선임기한



<표 4> 감사인 선임기한 위반 예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12월 결산)는 '24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5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5.4.30. '가' 회계법인과 초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26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와 유사한 시점인 '26.5.30. 감사계약을 체결함 → '26사업연도에는 계속감사 회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6.2.14.)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동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임

5)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2) 선임대상 사업연도

-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표 5> 선임대상 사업연도 위반 예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사는 '24년 대형비상장회사 → '25년 기타비상장사 → '26년 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24년에 '나' 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4~'26년)을 체결하고 '나' 회계법인을 '26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대형비상장회사가 된 '26사업연도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재선정하고, 3년('26~'28년) 감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①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없이 ②기존 계약만('26년) 유지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함

3) 감사인 자격요건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 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
- 특히, 주권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39개)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표 6> 감사인 자격요건 위반 예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사는 상장을 위해 '25사업연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26사업연도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아 미등록인 '다'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함 • 예상과 달리 '26사업연도 중순 상장이 되었지만, 기존 감사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다' 회계법인과 '26사업연도 감사를 진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함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4) 감사인 선정권자

-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함
- 그 외 기타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함

<표 7> 감사인 선정권자 위반 예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4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동사의 감사는 '25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 회계법인을 선정함 • 합병으로 '25년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26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 회사가 되었으나, '25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26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선위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26사업연도에 감선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함

5)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 감선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함
 - 위원장 1인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함
- 감선위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감선위 위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의 전원 출석으로 감선위(약식 감선위) 개최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가능함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 임직원 중 1인으로 함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표 8>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위반 예시

내용
① 위원자격 및 위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사는 '26~'28 사업연도에 대해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신규 감사가 선정한 '마'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선위 구성 시 신규 감사,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주주 등 5명으로 감선위 위원을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선위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선위 위원으로 사외이사를 1명만 포함해야 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임 F사는 '26~'28 사업연도에 대해 사내이사 및 회계팀장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감선위를 구성하여 '바' 회계법인과 자유선임을 계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이사(상법상 비상무이사 포함) 및 직원은 감선위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임
② 부적격 위원장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G사는 '26~'28 사업연도에 대해 내부감사를 감선위 위원장으로 하여 감선위를 구성하고 '사'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선위 위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임
③ 약식 감선위 운영방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H사는 '26~'28 사업연도에 대해 약식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아'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전문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약식 감선위에 참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는 약식 감선위 위원장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약식 감선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임

6) 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는 없음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표 9> 감사인 선임보고 위반 예시

내용
• 대형비상장회사인 L사의 감사는 '자' 회계법인과 체결한 3년 감사계약('23~'25년)이 만료됨에 따라, 감선위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26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함
• '26.2.10. '자' 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감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함
→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함에도,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을 위반함

시사점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단순히 선임기한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유형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 적법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회사 유형별로 적용되는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회사 유형을 명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선임 일정과 절차를 점검함으로써 지정감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12월 결산 회사는 2026년 2월 14일까지 선임을 마쳐야 하지만, 2026년의 경우 2월 14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선임 가능 기한은 첫 영업일인 2월 19일까지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4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

요약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회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발표함
-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공공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회계개혁 논의 후퇴 및 국제사회에서의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 등이 올해의 뉴스로 선정됨

2025년 회계업계 뉴스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올해 회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고 18일 밝힘
- 선정된 올해의 뉴스는 △영리·비영리·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공공성 강화 △서울시 조례 복원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임
 - 회계투명성 강화, 회계제도 개편 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 회계의 공공재적 역할과 전문성이 함께 주목받았다는 분석임
- 이와 함께 △회계개혁 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요구 등이 꼽혔음
 - 회계 품질과 인력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외에도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AI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 업무 방식의 변화 등이 올해의 뉴스로 선정되었음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재무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회계의 역할 역시 재무정보를 넘어 비재무정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함
- △2026년 세계회계사대회(WCOA) 국내 최초 유치 △지역투명성위원회 발족을 통한 회계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 등을 꼽았음
 - 대한민국 회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부각되었다는 평가임
- 최운열 회장은 "회계가 기업의 내부관리 수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공가치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프라임을 확인한 한 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II. 2025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

<표 1>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정 올해의 뉴스(무순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조례 복원,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 영리·비영리·공공부문 통합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회계투명성 강화 과제 • 회계개혁의 후퇴, IMD 회계투명성 순위 60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계도 과당경쟁 지양, 회계품질 우선 필요 •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요구 •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 AI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 업무방식의 변화 • 세계회계사대회 첫 유치 • 회계사, 지역 밀착 조직적 사회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투명성위원회 발족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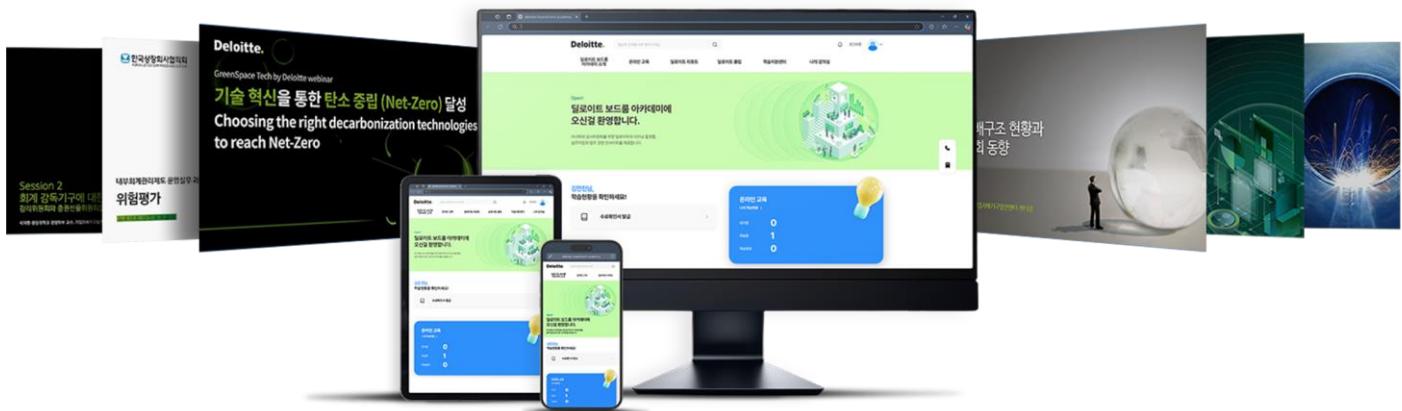
III. 그룹 센터 소식

이사회·감사위원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이용 대상 전면 확대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 및 감사님을 비롯해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딜로이트와 외부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담은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의 문을 넓혔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힘
- 플랫폼의 주요 콘텐츠는 '온라인 교육',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은
 - ▲이사회 프로그램
 -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그램
 - ▲스페셜 아젠다 프로그램
 4개 영역으로, 직무별 학습 목적에 맞춰 제작된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 제공됨
-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공시, AI, ESG 등 현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딜로이트 및 외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반영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임
- 해당 플랫폼은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공시를 위한 교육 수료 확인서도 발급 가능함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회계감사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통합 재무 서비스 그룹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 minjyoo@deloitte.com

자문교수단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Partner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Director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Manager

juyeonlee@deloitte.com

이화연 Senior Consultant

hwaylee@deloitte.com

권예은 Senior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